Kangnam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인재상과핵심역량 대 학 헌 장 창 학 이 념 교 훈 교 육 목 적 교 육 목 丑 약 사 연 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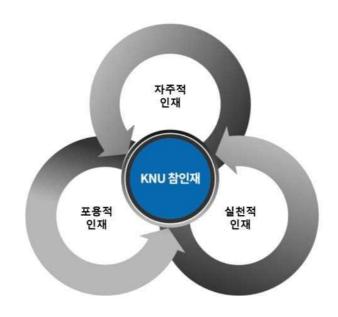
인재상과 핵심역량

☑ 강남대학교는 '경천애인' 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양인 양성', '전문인 양성 '봉사인 양성' 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KNU 참인재」를 인재상으로 설정

☑ 「KNU 참인재」는 경천애인을 실천하는 강남인으로서 6 대 핵심역량을 갖춘 자주적(자기주도 역량, 창의융합 역량)이고, 포용적(소통 · 협력 역량, 글로벌시민 역량)이며, 실천적(종합적사고 역량, 정보·자원기술활용 역량)인 인재를 의미

// KNU 참인재

- 자주적 인재: 자신의 학문과 전공 영역에서 필요한 개념과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 포용적 인재 : 이념과 가치관의 다름을 넘어 모든 사람과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인격체로 서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섬겨 너그러움을 발휘하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
- 실천적 인재 : 인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를 스스로 실천하고 인류공영과 발전 에 공헌함으로써 기독교 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



🖊 핵심역량 및 의미

핵심역량	의 미	학위역량
자기주도 역량	자신의 적성, 재능, 성향을 이해하여 동기를 가지고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스스로 정한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관리, 개발하는 능력	자기이해 자기관리 진로개발
창의융합 역량	- ' ' - ' - ' 일거야고 새로운 내내 내가 막!!도를 도움이내 수네서 무세를 !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글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타인의 소통·협력 생각이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역량 전달하여 갈등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조성하여 협력과 조화를 통한 성과를 만드는 능력		의사소통 갈등관리 공감 및 협업
글로벌 시민 역량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배경이나 사상, 관점을 지닌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사회공헌
종합적 사고 역량	고차원의 사고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입체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찾아낸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실행결과를 성찰하는 능력	분석적 사고 논리적 추론 실행 및 성찰
정보자원기술 활용 역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을 탐구하고 학습하며, 정보통신기술과 가용자원을 이용해 유용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능력	학습민첩성 정보기술이용 혁신능력

대학헌장

제1장 총칙

제1조(설립목적) ①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는 本 교 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 민족과 인류를 위 하여 진리·자유·평등·평화·복지를 추구하며, 경 천애인'의 창학이념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교육의 터전으로 1946년에 설립되었다.

- 1.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고 실천한다.
- 2. 우리는 자유정신을 바탕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가 치있는 삶을 추구한다.
- 3.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한다.
- 4. 우리는 세계 평화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 ② 본교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학부 중심의 실용교육을 실천한다.
- ③ 본교는 특성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화·세계화에 부응하는 열린 교육 체제의 기틀을 마련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연마하여 민족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본교는 창학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양인의 양성, 전문인의 양성, 봉사인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특성화 방안) 사회경제적 환경과 산업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키는 복지 · ICT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문분야의 융합화와 선도화를 통해 학문분야의 특성화를 추구하고, 교육과정의 개방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과 성과를 제고한다.

- 2.사회복지/실버산업과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대학으로 복지융합대학, ICT건설공과대학을 설치 · 운영한다.
- 3. 특성화 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성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특성화 학문분야와의 융·복합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발전방안) ① 본교는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육 목적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발전 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와 교육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부(과)에서는 본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와 부합하는 학부(과)의 독창적인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

제5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본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실용적 전공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방향을 설정한다.

- 1. 미래지향적 특성화 학문 분야 및 융·복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2. 학생들에게 다 전공 이수 기회를 확대하고, 타학과 및 전공 교과목 이수를 장려하기 위해 열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3. 사회경제적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유연한 교육과 정을 운영한다.
- ② 교양교육과정에서는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③ 전공교육과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1. 각 대학, 학부(과) 및 전공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2. 학부(과)나 전공에 적절한 실무 교과목을 개발한다.
 - 3. 국내외 대학간 학점 교류를 실시한다.
 - 4. 전부·전과 기회를 확대한다.
 - 5. 최소 전공 인정 학점 제도를 시행한다.
 - 6. 복수/부 전공 제도를 시행한다.
 - 7. 시간제 학생 등록제를 실시한다.
- ④ 자율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학생에게 창의적인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한다.

⑤ 평생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을 활성화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확보) ① 본교는 선진교육 수준의 교원 대학생 비율을 확보할 때까지 각 분야별로 전임 교원을 충원한다.

② 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권위를 인정받는 석좌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특별계약교원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제7조(시설 확보 계획) ① 본교는 선진교육을 실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의실, 실험실습 실, 교수 연구실 등의 교육 기본 시설을 적정 수준 이 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한다.

- ②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의실에는 멀티미디어 환경을 구비한다.
- ③ 본교의 실험·실습 시설은 '강남대학교 실험·실습 설비 기준' 에 맞추어 학과 및 전공별로 갖추도록 하 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각 대학은 실험·실습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계열, 학과 및 전공의 실험 여건에 따라 가급적 공동으로 시설한다.
- 2. 대학의 특성 및 학술 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기준 이외의 설비도 가능한 한 확보하도록 한 다.
- 3. 실험·실습 설비 중 노후 설비는 그 사용연한이 초과하기 전에 대체 또는 보완한다.
- 4. 교수 1인당 1개 연구실을 확보하고, 실험 · 실습을 위주로 하는 학부(과)의 교수들에게는 개인 연구실외에 전공 분야 실험실습실을 제공한다.
- ④ 교육 및 연구시설과 복지시설을 개선·확충하여 장기적인 명품 캠퍼스를 구현한다.
- 1. 교육용 기본 시설의 체계화를 위해 캠퍼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 2. 시설물의 장기적인 기획과 계획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효율화를 기한다.
- 3. 교육 기본 시설은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설해 나간다.
- 4. 환경 친화적 캠퍼스 구축을 위하여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다.

- 5. 복지시설 개선으로 다양한 편의시설 및 공간을 확충한다.
- ⑤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 매체 제작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8조(기타 시설 확보) ① 본교는 교육과 연구의 수월 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육관, 대학 본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강당, 전산정보원, 기숙사 등 교육 지원 및 부대 시설을 확보한다.

- ② 중앙도서관은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서 확대와 전산화를 도모하며, 도서관의 정 보 제공 다양화를 위하여 정보봉사실, 영상미디어실, 종합정보자료실, 전자정보실과 정보검색실을 설치한다.
- ③ 종합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및 행정의 효율화를 기한다.
- ④ 실험·실습 설비는 학부 및 학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⑤ 어학 실습실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 ⑥ 기숙사와 사생들을 위한 후생 시설을 확보한다.
- ① 학생회관과 학생식당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복지 시설을 확보한다.
- ⑧ 교직원 식당을 확보하고 교수회관을 건립한다.

제4장 학사 관리

제9조(학생선발) ① 본교는 창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반영한 학생선발기준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입시제도를 운영한다.

② 학생선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매년 공표하는 입학요강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학생 정원 관리) ① 학생 정원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력수급 및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교의 교육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②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능동적 학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부·전과 제도를 두고 시행한다.
- ③ 학생들의 학교간 이동 및 대학졸업자의 재수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편입학 및 재입학 제도를 두고 시행한다.

제11조(학기) 학기는 현행의 2학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부제와 복수전공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절수업을 운영한다.

제12조(대학간 학술교류 등) ① 국내·외 대학과의 공 동연구, 학술정보교환, 연구기자재의 공동사용 등 인 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②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 상호 인정제를 통하여 열 린교육을 실천한다.

제5장 대학 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3조(교직원의 채용기준) ① 본교 전임교원은 해당분 야의 전공자로 연구실적, 학술활동 및 교육 경력, 연구 및 학생지도, 산학협력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법인정관, 전임교원인사규정, 외국인교원인사규정,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 등에 따른다.

- ② 석좌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겸임교수 등의 임용은 특별계약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③ 강사의 임용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
- ④ 직원은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되 세부사항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직원의 채용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분야의 공적과 학문업적이 탁월한 자 등 공개채용 절차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5조(교원평가) ① 본교 전임교원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활동, 창학이념 및 품위유지, 기타 등의 세부 영역 을 두어 공정한 평정을 한다.

② 본교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은 객관적이고 공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전임교원 인사규정, 외국인교원인사규정,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교원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 교원의 연구력 향상 및 질 제고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및 인사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다음의 제도를 시행한다.

- 1. 교수연구년제규정에 의거한 교원 연구년 제도를 운영한다.
- 2. 외부연구비관리규정 및 교내연구비관리지침에 의거한 연구비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제2절 재정

제17조(재정 확보방안)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 구조를 혁신하고 수익재원의 다변화를기한다.

- 1. 다양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학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춘다.
- 2. 재단의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 입금 비율을 높인다.
- 3.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외부 수탁연구 및 외부 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
- 4. 산학협력단 내에 학교기업을 설립하여 재정을 안 정적으로 확보한다.
- 5. 대학발전기금 조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모금을 활성화한다.
 - 6. 외부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 7. 교육 시설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대수입을 꾀한다.
- 8. 교육원가에 따라 교육 단위별(학부, 학과)로 등록 금을 차등 책정한다.
- 9.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등 교육사업 개발을 통하여 교육부대수입 증가를 꾀한다.
- 10. 국고보조금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선정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수입을 확충한다.
- 11. 예금 및 기금의 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 발생을 꾀한다.

제18조(기부금 모금) ① 본교는 장·단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금 운동을 전 개한다.

- ② 기부금 모금 및 관리·운용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모금 전략의 수립, 기금의 운용관리, 기부자 예우 및 보상계획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 ③ 교육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동문, 학부모, 기업체 및 기관, 지역사회 등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연대를 강 화하며 기부 환경을 조성한다.
- ④ 본교는 기부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운용한다. 제19조(재정 공개) 본교는 학교 운용 자금 계획서와 결산 재무제표를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교육수요자들에게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제20조(재정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예산

결산위원회 및 감사 조직을 통해 본교의 재정 운용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확 보한다.

②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학교 운용 자금 계획서 및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이의 사항을 접수하 여 감사·시정한다.

제21조(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 계획 및 관리) ① 본교의 재단 전입금 확충을 위해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익성을 높인다.

- ② ㈜청담상사 및 법인소유자산을 고수익 용도로 전환하여 임대수입을 높이고, 연수원 등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임대 수입을 확보한다.
- ③ 해외수익사업을 다각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

제6장 후생복지

제22조(학생 장학금) ① 외부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동 문 장학금을 활성화한다.

- ② 장학기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본교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업성적우수 학생, 경제사정곤란 학생, 학교명예공로 우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제도를 실시하며, 제반업 무는 학칙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학생 자치기구 지원) ① 본교는 학생의 자율적 인 활동을 통해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하여 총학 생회, 단과대학, 학부(과) 학생회와 학생들의 동아리 활 동을 장려한다.

- ② 학생회실 및 동아리방을 배정한다.
- ③ 학생 자치활동 예산을 지원한다.
- ④ 동아리 지도교수제를 도입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제24조(학생 기숙사) 기숙사를 설립하여 전문인을 두고 운영하며, 사내에 식당, 휴게실, 세탁실과 독서실 등의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제25조(교직원 복지) 본교는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교육 •연구•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하 고 제도를 운영한다.

제26조(학생 진로 · 심리 상담 및 취창업 지원) ① 진로 · 심리 상담 및 취창업 지원 전담부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한다.

- ② 진로·심리 상담 전담부서는 심리검사와 적성검사를 토대로 진로·심리 상담을 진행한다.
- ③ 취창업 지원 전담부서는 학생들의 취창업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④ 현장실습 전담부서는 현장실습을 통하여 취업역량 을 강화한다.
- ⑤ 산학협력 지원부서는 산학 협력 기술 자문과 경영 지도를 졸업생의 취업과 연계한다.

제7장 장·단기 발전 계획

제27조(장·단기 발전 계획) 본교의 장·단기 발전 계획은 창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과 대학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대학헌장의 보완) 대학헌장의 제정과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 칙

- (1) 이 헌장은 1997년 11월 30일 공표한다.
- (2) 이 헌장은 1999년 03월 01일 공표한다.
- (3) 이 헌장은 2001년 10월 20일 공표한다.
- (4) 이 헌장은 2005년 05월 12일 공표한다.
- (5) 이 헌장은 2009년 05월 11일 공표한다.
- (6) 이 헌장은 2016년 08월 10일 공표한다.
- (7) 이 헌장은 2020년 10월 15일 공표한다.

창학이념

강남대학교는 기독교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진리 · 자유 · 평등 · 평화 · 복지를 추구하며 '경천애인'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교 훈

敬天愛人

교육목적

강남대학교는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연마하여 민족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 교양인 양성
- 전문인 양성
- 봉사인 양성

약 사

강남대학교는 1946년 8월 희망과 혼란이 교차하는 이 땅에 이호빈 목사가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초교파적인 평신도 교육을 펼쳐나갈 중앙신학원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1948년 4월 우암 차재윤 선생이 본 학원의 설립이념에 감응하여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소재의 토지 30만평을 희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단 법인 우암재단이 설립되었다. 동년 8월에는 대학령에 준거하여 4년제 중앙신학원이 설립되었으며 변성옥 박사가 초대교장으로 취임하였다.

1953년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사회사업학과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사업 분야를 개척하여 왔으며 오늘 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지도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경영난으로 인하여 큰 고난이 닥친 때도 있었으나 학교가 담당해야 할 교육적 사명을 지켜나가면서 위기를 튼실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본 신학과 출신이며 독실한 기독교인인 윤도한 박사가 1972년 8월 28일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막대한 사재를 희사하고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학교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1976년에는 4년제 대학 동등학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법인 명칭과 교명을 강남학원과 강남사회복지학교로 각각 변경하면서 정규 대학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다져나갔다.

1992년에는 6개 단과대학 28개학과를 개설하여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21세기를 대비한 대학 교육의 미래형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노인복지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과 역사를 가진 대학이 되었다.

1993년에는 신학대학원을 설립하여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행정제도 개혁, 홍보활동, 후생관 건립 등 학교 발전을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었다. 평생교육원, 어학교육원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재학생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였다. 1994년에는 일반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1997학년도 봄학기부터 학부제를 시행하고 복수전공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명문사학으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된 강남대학교는 1996년에 7개 단과대학, 8개 학부, 11개 학과로 확대 개편되었다. 1997년에는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개교50주년을 맞은 1998년에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종합평가에서 전 영역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999년에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개설과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었으며,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원영역평가에서 우수대학원으로 평가

받아 그간 강남대학교가 축적해온 학문적인 수준을 인정받았다.

2000년에는 세계 각국의 유수한 대학과 협력의 결실을 맺어 세계 속의 강남대학교로 발돋움하였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 편제를 3개 단과대학, 14개 학부, 3개 학과로 개편했다. 또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재정지원 평가에서 전국 20위권 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상위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었다. 2001년에는 산업정보대학원을 신설하고, 대학 특성화 전략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을 신설했다. 2002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학문분야 평가에서 사회복지분야와 수학분야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고,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에서도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다. 2003년에는 21세기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목적지향 맞춤형 실용교육'을 제시하며 교육의 새로운 모형을 마련하였고,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산・학・연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2004년에는 대학의 특성화, 국제화, 차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대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시아 최초의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를 신설하였고, 세계화에 발맞춘 중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최초의 중국학대학을 신설하였으며, 국내 4년제 대학 최초로 부동산・세무학부를 신설하였다.

2005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주)한국신용평가에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A-' 등급을 받았으며, 2004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아시아복지거점대학' 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사회복지대학을 신설했으며, 중국과의 학문적 교류를 높이기 위해 중국 북경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카자흐스탄학 전공을 국내 최초로 신설하는 등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갔다.

2006년에는 해외 명문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해 심전산학관을 착공하는 등 대학의 국제화에 더욱 힘썼다. 또한 네팔, 몽골, 태국 등 제3세계 지원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최우수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3년 연속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내실 있고 특성화된 명문대학이라는 강남대학교 명성을 확인하였다.

2007년에는 노동부 주최 '2007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에 재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고품질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007년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강남대학교는 4년 연속 선정이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전문화된 교원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범대학이 신설되었으며 일반대학원에 특수교육과가 신설되었다.

2008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8년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연차평가를 통해 2007년에 이어 5년 연속으로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2007년에 이어 노동부 주최 2008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 사업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전공별 특성화와 전문화를 목표로 기존 제 I 대학, 제Ⅲ대학, 제Ⅲ대학을 세분화하여 인문대학, 국제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체능대학으로 개

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2실 5처 4센터 16팀 1감사관에서 2실 4처 5센터 9팀으로 개편하였다. 부설기관으로서 화성시 남부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되어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사회복 지분야의 명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2009년에는 노동부 주최 '2009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의 객관적인 주요 지표들을 근거로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2009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내실 있는 대학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또한, 2009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신규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입시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았다. 그 동안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온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주관 '2009년 제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에 선정되었다.

2010년도에는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에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수준 높은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10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꾸준한 지표관리와 2009년 우수한 사업실적으로 2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도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선정되어 2년 연속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지원대학에 선정되었다.

2011년도에는 용인시 관내 최초의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를 경기도, 용인시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대학교육의 수준과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열정의 결과로 2009년,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모두 3년 연속 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연중대학으로 인증받아 향후 5년 동안 공식적으로 내실있는 대학임을 다시 한번 입증 받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도에는 지속적인 지표관리와 노력으로 2009년, 2010, 2011년에 이어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입학사 정관제 지원사업 모두 4년 연속 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미래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강남미래위원회를 총장직속위원회로 신설하여 대학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연구하게 되었다.

2013년도에는 5년 연속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3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학경영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대학의 체질 개선과 효율적인 체제 확립을 위해 학과평가제도 및 부서평가제도를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고 대학의 미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학사구조조정 및 학과경쟁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도에는 대학평가를 대비 대학. 학과의 조정 등을 위해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6년도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이행과제 점검과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이루어졌고 대학특성화사업(CK) 'Wel-Tech기반 융합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2016년~2018년)'에 선정되었다. 또한 개교 70주년을 맞아 우리대학의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과 제안의 결과로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 재수립,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행정기구 전면 개편 등을 단행하였다.

2017년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컨설팅을 통해 단행한 대대적인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첫 시행의 해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 최신 교수법 확산,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2017.03~2020.02, 3년)으로 선정되었고 일 반대학원 수화언어통번역학과 국내 최초 한국수어교원 자격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의에 합격하였으며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18년도에는 본교의 학사경고자 및 학습부진 학생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ABA-Learning 시스템' 이 전국 대학교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 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청해진대학 운영기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멕시코 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수 위탁기관', 국립국제교육원 '교원 해외파견 사업 단기 해외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으로 선정되어학생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2019년부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2019년도에는 본교 등 경인지역 14개 대학이 지역사회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경인지역대학간 복수학위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9년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기념식' 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9년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약 43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았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하는 '2019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자격모니터링 결과' 인증유지의 결실도 맺었다.

2020년도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교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인문사회관 1층 학생성공센터를 구축하였으며 3년 연속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외교부 재주동 포재단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산학협력단은 화성시 동탄장애아동재활센터, 화성시장애아동활동재활센터, 경기도 하남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포시립도담어린이집,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5월에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다.

2021년도에는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며 경기남부 지역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사업 인천경기 거점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장애학생 처우에 대한 본교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2021년 상반기 정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연수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9월에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대학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2년에는 3주기 대학기관평가 인증에서 '인증'을 획득하면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충실히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았으며, 장애대학생 진로 · 취업 지원사업 인천 · 경기 거점대학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관 선정 등 지역 내의 대학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남시 사회경제지원센터, 용인시립구갈어린이집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산학협력의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산학협력단 위탁 하남시 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창업보육센터는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달성하였다.

2023년에는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반도 체전공트랙)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고 반도체트랙사업의 일환으로 반도체시스템융합전공 신설 및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선정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양성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 유수의 대학들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의 2023년 사회경제 선도대학 및 송파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과 위탁운영 시립구갈어 린이집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의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사업 선정,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 평생교육원의 고용노동부 2024년 아이돌봄 양성과정 훈련기관 선정 등 산관학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 표

1946	08.01	초교파적 입장에서 평신도의 자립적 교육 이념을 달성키 위하여 중앙 신학원을 설립하다. (설립자 : 이호빈 목사)
	1101	설립이념에 뜻을 같이한 수명의 교수와 70여명의 학생이 서울 YMCA 강당에서 개원하다. 원장
	11.04	변성옥 박사 취임하다.
1948	04.20	독지가 차재윤 선생의 부동산(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소재) 30만평을 기부받아 재단 법인 우암재
		단 설립하다.
		초대 이사장 정일형 박사 취임하다.
	08.12	대학령에 의한 4년제 중앙신학교 설립하다.
		학과편제 : 신학과 전문부
		초대교장 변성옥 박사 취임하다.
	03.20	제2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1951		6.25동란으로 본교를 제주에 설치하고 부산과 대구에 각 분교를 두어 전시에도 꾸준히 속강하다.
1953		서울 남산 소재 향린원에 서울 분교를 설치하여 본교 완전 복교시까지 속강하다.
	06.03	한국 최초로 사회사업학과를 신설하다.
	09.15	제3대 교장 정일형 박사 취임하다.
1954	03.01	농촌 평신도 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여 교지로 보유하다.
	06.12	서울 종로구 장사동 소재 교지 및 교사를 정부로부터 매입, 시설을 확장하다.
		학과편제 : 신학부 1/2부, 전수과, 사회사업학과, 교회음악학과
	06.15	중신학보 창간하다.
1956		4대 교장 김태묵 박사 취임하다.
		제2대 이사장 차재윤 선생 취임하다.
1958	01.01	제5대 교장 김우현 목사 취임하다.
	03.03	부천시 교지에 교사 100평 신축하여 농촌출신 평신도의 자립적 정신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
		다.
		•
1960	04.30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07.01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1961	07.01 09.16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1961	07.01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
1961	07.01 09.16 01.09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 속강)
1961 1962	07.01 09.16 01.09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 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1961 1962	07.01 09.16 01.09 12.30 01.18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 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1961 1962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 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1961 1962 1964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05.05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 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제8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1961 1962 1964 1965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05.05 06.04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 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제8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경기도 이천군 소재 부동산 잔영 7만여 평을 재취득, 권리 등기를 필하다.
1961 1962 1964 1965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05.05 06.04 07.01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 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제8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경기도 이천군 소재 부동산 잔영 7만여 평을 재취득, 권리 등기를 필하다. 제9대 교장 안병무 박사 취임하다.
1961 1962 1964 1965 1966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05.05 06.04 07.01 07.07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 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제8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경기도 이천군 소재 부동산 잔영 7만여 평을 재취득, 권리 등기를 필하다. 제9대 교장 안병무 박사 취임하다.
1961 1962 1964 1965 1966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05.05 06.04 07.01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제8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경기도 이천군 소재 부동산 잔영 7만여 평을 재취득, 권리 등기를 필하다. 제9대 교장 안병무 박사 취임하다. 제4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장사동 교지에 도시 계획에 의하여 교사 겸 상가 (세운상가 "가" 동 중 약 1,845여 평)을 건축하
1961 1962 1964 1965 1966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05.05 06.04 07.01 07.07 07.10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제8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경기도 이천군 소재 부동산 잔영 7만여 평을 재취득, 권리 등기를 필하다. 제9대 교장 안병무 박사 취임하다. 제4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장사동 교지에 도시 계획에 의하여 교사 겸 상가 (세운상가 "가" 동 중 약 1,845여 평)을 견화다다.
1961 1962 1964 1965 1966 1967 1968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05.05 06.04 07.01 07.07 07.10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제8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경기도 이천군 소재 부동산 잔영 7만여 평을 재취득, 권리 등기를 필하다. 제9대 교장 안병무 박사 취임하다. 제4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장사동 교지에 도시 계획에 의하여 교사 겸 상가 (세운상가 "가" 동 중 약 1,845여 평)을 건축하다.
1961 1962 1964 1965 1966 1967 1968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05.05 06.04 07.01 07.07 07.10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제8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경기도 이천군 소재 부동산 잔영 7만여 평을 재취득, 권리 등기를 필하다. 제9대 교장 안병무 박사 취임하다. 제4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장사동 교지에 도시 계획에 의하여 교사 겸 상가 (세운상가 "가" 동 중 약 1,845여 평)을 간축하다. 제5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1961 1962 1964 1965 1966 1967 1968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05.05 06.04 07.01 07.07 07.10 10.15 03.14 05.15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 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제8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경기도 이천군 소재 부동산 잔영 7만여 평을 재취득, 권리 등기를 필하다. 제9대 교장 안병무 박사 취임하다. 제4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장사동 교지에 도시 계획에 의하여 교사 겸 상가 (세운상가 "가" 동 중 약 1,845여 평)을 건축하다. 제5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제5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1961 1962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05.05 06.04 07.01 07.07 07.10 10.15 03.14 05.15 09.05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제8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경기도 이천군 소재 부동산 잔영 7만여 평을 재취득, 권리 등기를 필하다. 제9대 교장 안병무 박사 취임하다. 제4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장사동 교지에 도시 계획에 의하여 교사 겸 상가 (세운상가 "가" 동 중 약 1,845여 평)을 간하다. 제5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제6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제6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제10대 교장 선우남 교수 취임하다. 캠퍼스 확장을 위해 경기도 용인소재 32,719평의 부동산을 교지로 매입하다.
1961 1962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07.01 09.16 01.09 12.30 01.18 03.12 05.05 06.04 07.01 07.07 07.10 10.15 03.14 05.15	제6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이사장 직무대리에 박영규 목사 취임하다. 제7대 교장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본교는 5.16군정 각령 제283호 학교 정비령 제17조에 의하여 폐교되다. (잔여 학생은 졸업시까지 속강) 제3대 이사장 박영주 취임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단을 보강하고 학교법인 중앙재단으로 변경하다. 각종학교인 4년제 중앙신학교 재설립하다. (신학과 설치) 제8대 교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경기도 이천군 소재 부동산 잔영 7만여 평을 재취득, 권리 등기를 필하다. 제9대 교장 안병무 박사 취임하다. 제4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장사동 교지에 도시 계획에 의하여 교사 겸 상가 (세운상가 "가" 동 중 약 1,845여 평)을 건축하다. 제5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제5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11.11	제7대 이사장 이병균 장로 취임하다.
	11.27	제8대 이사장 이호빈 목사 취임하다.
1972	07.07	이사장 직무 대리에 윤도한 장로 취임하다.
	09.18	제9대 이사장 윤도한 장로 취임하다.
1973	07.04	윤도한 이사장으로부터 강남구 대치동 214번지 일원 부동산 5,071.8평(환지 지적)을 기부받아 학
		교 시설 용지로 변경하다.
1974	01.21	강남대학으로 발족키 위한 대치동 교사 건축 착공하다.
	03.01	제11대 교장으로 선우남 교수 재취임하다.
	09.14	교사 총건평 819.42평(24개 교실) 준공하다.
	10.14	장사동 교사에서 대치동 신축 교사로 이전하다.
1975	03.25	대학기준령에 준한 체육장 설치공사 정지작업을 완료하다.
	04.23	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1호 및 문교부 고시 제329호에 의한 4년제 대학 동등 학력 인정 학교로
	00	지정받다.
1976	03.15	윤도한 이사장으로부터 6,200여만원을 기부받아 체육장 및 주변 조경공사를 완성하다.
	05.21	정규대학 학제 개편을 위해 중앙신학교를 강남사회복지학교로 교명 변경하다.
	07.01	학교법인 강남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12.31	사회사업학과를 신설하다.
1977	04.20	당초 설립 이념에 따라 신학과에 신학 전공, 교회음악 전공, 기독교 문학 전공과 사회사업학과에
.3	0 1.20	사회사업 전공, 복지 행정 전공의 교육을 실시하다.
1978	02.15	산업정보학과를 신설하다.
	03.01	제12대 교장으로 김덕준 박사 취임하다. 신갈교지 21,718평 매입하다.
	04.20	윤도한 이사장이 신축교사 건축 기금으로 충당키 위하여 1억원을 기부하다.
	06.26	신축 교사 신갈 도시 계획 시설(학교) 결정되다.
	09.30	신축교사(1,827평)를 착공하다.
	11.20	중신학보를 강남학보로 제호 변경하다.
	12.15	보육학과, 도서관학과를 신설하다.
1979	03.05	대치동 교사 증축(268평)공사 준공하다.
	12.10	종교음악과, 특수교육학과, 복지행정학과를 신설하다.
	12.20	신축 교사 준공 (1,827평)하다.
1980	03.01	본교 용인 신축교사로 이전하여 수업실시(야간은 영동 분교에서 수업)하다.
	07.07	수익 재원으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소재 부동산 5,097평을 매입하다.
	10.30	본관 신축 공사 (1,369평)를 착공하다.
	11.13	보육학과 교직과정 설치하다.
	11.26	8개 학과 신설 및 3개 학과 증원하다.
	11.20	-학과 신설 : (주간)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미술학과, 경영학과, 교육학과. (야간) 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육학과
		·학과 증원 : (추간) 종교음악학과, 신학과. (야간) 경영학과
	12.30	수익재원으로 강남구 청담동 소재(주) 청담시장(주식 5만주, 대지 500평, 건물442평) 설립하다.
1981	02.10	제13대 교장으로 박영주 교수가 취임하다.
	08.10	제14대 교장으로 이정선 박사 취임하다.
	09.03	본관 신축공사(1,369평) 준공하다.
	12.02	경제학과(주간)와 부동산학과(주간)를 신설하고 종교음악학과를 음악학과로 명칭 변경하다.
	12.29	
1982	04.04	
. 302	05.17	학생관 신축 공사(1,143평) 착공하다.
	07.27	도서관학과 정사서 자격증 발급 지정받다.
	11.16	조건한점을 160학점제에서 140학점제로 변경하다.
	11.10	릅ㄱㅁㄹ 100ㄱㅁ伽쎅쒸 190ㄱㅁ씨포 COMᅱ.

		보육학과를 유아교육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다.
1983		학생관(1,143평)준공하다.
		인문사회관 강의실(1,027평)을 증축 착공하다.
		특수교육학과 교직과정 설치하다.
1984		미국 Centenary College, Millsaps College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운동장 스탠드 건축공사 착공하다.
		인문사회관 강의실(1027평) 증축 공사 준공하다.
400-	12.31	
1985		제15대 교장으로 윤세창 박사 취임하다.
		예술관 강의실 신축공사(800평) 증축공사 착공하다.
		운동장 스탠드공사 준공하다.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1,492평) 착공하다.
		예술관 강의실 증축공사(800평) 준공하다.
1096		서울교사(1,096평)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다.
		중앙도서관 (1,492평) 준공하다.
1501		교육관 신축공사 (1,463.55평) 착공하다.
		일본 북교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1988		4개학과 증원하다 (신학과, 사회사업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목양관 신축공사 (967.88평) 착공하다.
		교육관(1,463.55평) 준공하다.
	11.07	미국 Huntington College, George Fox College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1990년 3월부터 대학개편계획 승인받다.
1989		제16대 교장으로 손종률 박사 취임하다.
		경천관 신축공사 (1,391평) 착공하다.
	08.10	목양관 (967.88평) 준공하다.
	10.27	대학개편 인가받다.
		학과편제 및 정원 : 3개학부, 14개학과, 910명 - 인문과학부 : 신학과(40), 국어국문학과(50), 영어영문학과(50), 교육학과(50), 특수교육과(50), 유아
		- 인문과역구 : 선역과(40), 국어국문역과(50), 영어영문역과(50), 교육역과(50), 국구교육과(50), 규어 교육과(100)
		-사회과학부 : 사회사업학과(80), 경영학과(100), 행정학과(100), 경제학과(100), 부동산학과(50), 도
		서관학과(40)
		-예술학과 : 미술학과(50), 음악학과(50)
1990		강남사회복지학교 폐교하다.
		강남대학 개교하다. 강남대학 초대학장으로 손종률 박사 취임하다.
		경천관(1,393.45평) 준공하다.
	10.16	8개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60명)하다.
		신설학과 : 법학과, 경영정보학과, 무역학과, 수학과, 전산학과, 도시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디자 인학과
	10.25	이공관 신축공사(1,623.68평) 착공하다.
1001		신학과에 교직과정 설치하다.
1331		학부편제를 6개학부로 조정하다.
		예술관 증축(458평)공사 준공하다.
	10.21	4개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80명), 학과 명칭 변경하다.
	10.21	-신설학과 : 노인복지학과, 사회체육학과, 사회사업학과(야간), 세무정보학과(야간)
		- 명칭변경학과 : 전산학과 → 전자계산학과
1992	03.28	부설 강남사회복지관 개관하다.
	04.01	종합대학교 개편 인가받다.
		학과편제 및 정원 : 6개 학부, 26개 학과, 1,050명

	04.03	일본 숙덕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4.10	초대 총장에 손종률 박사 취임하다.
	07.31	2개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60명), 학과명칭 변경하다.
		-신설학과 : 영어영문학과(야간), 전자계산학과(야간)
		- 명칭변경학과 : 도서관학과 → 문헌정보학과
4000	12.31	이공관 건축(1,623.68평)공사 준공하다.
1993	01.21	예술관 1~5층 증축공사(1,511㎡) 준공하다.
	02.27	윤도한 이사장 특별연구기금 1억원 기탁하다.
	06.18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USC)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9.03	단과대학 신설인가 받다. (6개 대학, 28개 학과)
		-신설학과 : 종교철학과(야), 산업복지학과(야), 중국어중국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
	00.04	- 명칭변경학과 : 세무정보학과 → 세무학과
1001	09.04	신학대학원(신학과) 설립 정원 40명 인가받다.
1994	03.01	제2대 총장 조중연 박사 취임하다.
	03.04	평생교육원 설치하다.
	03.23	평생교육원에 강남대학교 부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 개원(보육교사 양성교육, 시설장 보수교육, 종사자 보수교육과정 개설)하다.
	04.01	주교육, 중시시 오구교육의 3 개월) 아니. 종합대학 편제에 준한 학칙변경 인가받다.
	07.01	후생관 신축(392평)공사 준공하다.
	09.05	전자공학과(주), 건축공학과(주), 법학과(야), 행정학과(야), 문헌정보학과(야), 부동산학과(야), 경영학과(야), 무역학과(야) 설치 인가받다.
		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10.05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증설하다.(서예, 수묵화, 한문, 사진학 과정 개설)
	10.21	일반대학원 40명(신학과, 국어국문학과) 및 사회복지대학원 60명(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부동산
	10.21	학과) 설립 인가받다.
1995	02.20	시전관(기숙사)건축(2,166평)공사 준공하다.
	10.24	대학원 4개학과 증과(사회사업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영어영문학과) 및 신학대학원, 사회
	10.21	복지대학원 증원 인가받다.
		대학원 60명 증원, 신학대학원 30명 증원, 사회복지대학원 20명 증원
	11.01	자원복지(사회봉사)센타 설립하다.
1996	01.20	천은관 신축(2,151.37평) 공사 준공하다.
	02.12	예술관 4층 증축공사(127m²) 준공하다.
		학생관 4층 증축공사(665m²) 준공하다.
		후생관 3층 건물 신축공사(1,296m²) 준공하다.
		창고 신축공사(189m²) 준공하다.
	03.04	어학교육원 개원하다.
	06.18	(주)삼보정보시스템과 산·학협약 체결하다.
	10.10	사회체육학과(야) 40명 증원인가 받다.
	10.24	교육개혁에 따른 학부제 운영 인가 및 사회복지대학 신설 승인받다.
4007	05.04	(7개 대학, 8개 학부, 11개 학과)
1997	05.01	우원관 지하1층 지상4층 신축공사(4,973m²) 착공하다.
	06.09	제3대 최병준 총장 취임하다.
	11.05	대학 총정원은 동결하고 자체정원조정하다. (종교철학과 10명 감원하고 경제통상학부(야간) 10명 증원)
	10.16	(응파일악과 10명 업권에고 성제공성악구(어진) 10명 당권) 중국 강남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10.16	중국 성급대역과 국제역출교류업정 제일이다. 미국 Mississippi State University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12.07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다.
	12.07	교육계획 구구대획으로 선명되다. 러시아 극동기술종합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12.29	니시에 그러기걸하답내식의 수세식물보규합당 세월이다.

1998 07.28 중국 심양사범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중국 장춘교육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7.30 10.16 우원관 지하1층 지상4층 신축공사(4,973m²) 준공하다. 신학과 40명, 종교철학과(야) 40명을 신학부(주)로, 어문학부(야)의 중국어중국학전공 40명을 어문 10.19 학부(주)으로, 사회복지학부(야간) 산업복지학전공 40명을 사회복지학부(주)으로, 세무학과를 경영 학부로 통합하고 문헌정보학과 10명과 세무학과 20명을 경영학부(주)로, 세무학과 20명을 경영학 부(야)로 소속 변경하고 사회체육학과(야) 20명을 사회체육학과(주) 20명으로 전환하다. 10.27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하다. 10.30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 현지방문실사 받다. 12.27 학사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다. 1999 02.24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평가되다. 02.26 제4대 윤신일 총장 취임하다. 대학교회 우원관으로 이전하고 입당예배 드리다. 03.24 미국 Troy State University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6.25 실내사격장 신축공사(172m²) 준공하다. 08.01 기구개편 시행하다. 08.03 이공관 5층 교수연구실 증축공사(984m²) 준공하다. 08.12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설립 승인받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5명 신설하다. (신학과, 사회사업학과) 11.19 교육대학원 80명 신설하다(특수교육, 유아교육, 교육상담, 교육행정) 12.24 심전관 2~4층 증축공사(686m²) 준공하다. 2000 01.27 중국 장춘세무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2.02 '99대학종합평가 대학원영역 평가에서 우수대학원으로 평가되다. 03.31 뉴질랜드 University of Otargo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5.12 대학교육협의회 학문평가(법학분야) 현지방문 실사받다. 07.18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3명 증원하다. (박사과정 총정원 8명) 08.08 대학 총정원은 동결하고 자체정원조정하다. (야간 100명을 감하고 주간 100명을 증원하다) 08.10 대학 및 학부편제 개편(안) 법인이사회 의결 승인되다. 08.29 한국교육개발원 2000학년도 신설 교육대학원 운영 실태 현지 실사를 받다. 교육부 대학 정원조정결과에 따라 대학(원)학칙을 변경하다 09.15 중국 北京大學 역사학과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10.15 10.24 중국 大連市國家稅務局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10.25 2001학년도 교육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40명 증원 8개 전공 신설(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사서교육, 평생교육, 일반사회교육, 디자인교육) 총정원 120명, 총전공수 12개 전공 10.28 중국 烟台大學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2001** 01.10 네팔 Tribhuvan University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학부 편제 개편(7개 대학을 3개 대학으로 개편하고, 학부제 전면 시행) 03.01 기구개편에 따른 학칙 및 규정류 전면 제·개정 완료 및 시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2001년도 학문분야평가 실시계획 통보되다. 03.02 평가대상분야: 교양교육분야, 디자인분야 이상 2개 분야 03.12 교육부 2000년도 대학 재정지원 공통지표 평가 결과 전국 29위 대학으로 평가받다. 04.02 샬롬관 지하2층 ~ 지상13층 신축공사(16,334m²) 착공하다. 04.18 오수정화조시설 관리동(50m²) 준공하다. 인문사회관 신축공사(4,941.1평) 착공하다. 04.19 캐나다 King's Colleg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5.24 중국 復旦大學(Fudan University) 인문학원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5.31 중국 靑島海洋大學(Ocean University of Qingdo)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2002.10 중국 '청도해양대학' 이 '중국해양대학(China Ocean University)' 으로 개명] 06.12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1년도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 기본계획 통보되다. - 평가대상분야 :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이상 3개학과 - 평가위탁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본교 한중조세연구소와 중국 인민대학 재정조세연구소간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7.04 07.26 2002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결과, 대학은 산업공학전공을 산업시스템정보공학전공으로, 미술학전공을 회화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석사과정)를 폐지하고, 부동산학과, 세무학과를 신설하다. 특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을 폐지하고, 산업정보대학원(정원 30명, 전공 : 기술경영, 정보통신공 학, 컴퓨터공학, 도시환경계획, 건축공학, 무역정보, 행정관리 이상 7개 전공)을 신설하다. 09.08 전문대학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을 신설하다.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30명, 총정원 35명) 2002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결과 체육교육전공을 신설하다. 10.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01년도 학문분야평가 현지 방문평가 실시하다. 평가대상분야: 교양교육분야, 디자인분야 쓰레기수거분리처리장 신축공사(206m²) 준공하다. 11.07 11.09 한국교육개발원에 주관하는 2001년도 일반대학 교육과 현지 방문평가 실시하다. 평가대상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11.30 중국 山東師範大學(Shandong Teachers' University) 미술계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12.06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및 대학원(교육대학원포함)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관련 학칙 및 제규 정을 정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다. **2002** 01.22 미국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1.23 미국 The North Carolina A&T State University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1.30 중국 四川大學(Sichuan University)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3.06 학교육협의회로부터 2002년도 학문분야평가 실시계획 통보되다. 평가대상분야: 사회복지분야, 수학분야 04.09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2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 기본계획 통보되다. 평가위탁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부설연구기관으로 산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다. 05.01 05.03 중국 中國人民大學(People's University of China) 재정금융학원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7.01 일본 구마모토대학(Kumamoto University) 교육학부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08.01 부설연구기관으로 도시연구원을 설립하다. 09.30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 미디어정보공학전공을 신설하여 지식정보공학부(응용수학전 공, 산업시스템정보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170명을 컴퓨터미디어공학부(컴퓨터 공학전공, 미디어정보공학전공) 70명, 전자·시스템공학부(전자공학전공, 산업시스템정보공학전공, 응용수학전공) 100명으로 분리하고, 관련 학칙을 정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다. 1030 2003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일반대학원은 문화비평학과를 신설하다. 신학대학원을 실천신학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학과를 신학전공(Th. M)으로 하고, 신학전 공(M. Din), 목회상담전공, 재활선교전공을 신설하다. 산업정보대학원은 행정관리전공을 자치행정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증권재테크전공, e-비즈니 스전공, 부동산재테크전공을 신설하다. 2003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11.12 사서교육전공을 폐지하고, 언어치료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을 신설하여 정원 10명을 증원하 다. (총정원 130명)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2002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현지방문 평가를 실시하다. 12.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02년도 학문분야 현지 방문평가 실시하다. 평가대상분야: 사회복지분야, 수학분야 샬롬관 지하2층 ~ 지상13층 신축공사(16,334m²) 준공하다.

- 평가대상분야: 경제학분야, 문헌정보학분야
- 01.20 제5대 총장에 윤신일 박사 취임(연임)하다.
- 02.13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2002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평가되다.
- 02.20 온실 신축공사(84m²) 준공하다.
- 02.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02년도 학문분야 평가결과 사회복지분야 및 수학분야 우수대학으로 평가되다.
- 06.03 본교 제피대학과 이탈리아 피렌체 국립아카데미아간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6.12 부설교육기관으로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중등 교육 연수원을 설립하다.
- 07.04 본교 제 I 대학과 독일 보훔의 루르대학교 개신교신학대학간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7.15 양궁장 신축공사(75m²) 준공하다.
- 07.18 본교 국제학부와 중국 중앙재경대학 중문과간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8.01 2004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조정 결과, 전자·시스템공학부를 전자·시스템·정보공학부로 명칭 변경하다. 행정기구를 5처 2실 18팀(20팀장)에서 4처 1실 17팀(17팀)으로 개편하여 비서실을 비서팀으로, 사무처를 총무처로, 총무/예비군행정팀과 재무팀을 통합하여 사무행정팀으로, 학술정보팀을 폐지, 학사지원처는 교무처로, 학술정보2팀(출판부, 교수매체센터)과 학생서비스센터를 폐지하되 출판부는 유지하고 교수매체센터는 폐지, 취업정보팀을 신설, 중앙도서관은 부속기관 독립시키켜 학술정보팀을 두고 학술정보1팀은 폐지, 전산정보센터는 전산정보원으로 명칭변경하고, 행정팀으로는 전산운영팀을 전산정보팀으로 명칭 변경하여 두고, 평생/어학교육팀은 부설교육기관(가상대학제외)을 독립운영체제로 강화하여 부설교육기관의 소속팀으로 하다.
- 08.04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 평가계획이 통보되다.
- 09.19 중국 동북재경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학교 진입로 정문 및 조형물 설치공사 착공하다.
- 09.22 본교 제Ⅲ대학과 일본 사가대학 문화교육학부간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중국 서안시세무학회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9.23 목공실 증축공사(47m²) 준공하다.
- 10.01 강남대학교 BPR사업을 추진하고 BPR사업 추진단을 구성하다.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대학종합자체평가실을 두다.
- 10.16 본교 제Ⅲ대학과 중국 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간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10.23 2004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 결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사회사업학과를 폐과하고, 부동산학과, 세무학과를 신설하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산업디자인학과를 신설하다.
- 10.27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국립사범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11.06 본교 중국학연구원과 중국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간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11.13 특수법인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다.
- 11.21 국방부로부터 학군장교(ROTC) 양성 시범대학으로 선정되다.
- **2004** 01.05 캐나다 King's Colleg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와 학생교류협정 체결하다.
 - 02.04 카자흐스탄 크즐으로다국립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2.11 중국 북방공업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2.17 카자흐스탄 크즐으로다국립대학과 학생교류협정 체결하다.
 - 03.30 학교 진입로 정문 및 조형물 설치공사 준공하다.
 - 05.04 중국 중앙민족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5.06 (주)티이피 및 독일 LPKF사와 공동연구개발협약 체결하다.
 - 05.18 카자흐스탄 카작국립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5.21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국립동방학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6.22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7.06 용인시와 용인발전연구센터 운영 협약 체결하다.
 - 07.20 학교 정문 안내실 신축공사(51.9m²) 착공하다.

- 07.23 2005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학칙을 정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다.
 - 단과대학으로 중국학대학(100명)을 신설하고 중국어문화학부(50명, 중국어문전공, 중국사회문 화전공) 및 중국실용지역학부(50명, 중국법정전공, 중국비즈니스전공)를 신설하다.
 - 부동산·세무학부(부동산전공, 세무학전공) 주간 87명, 야간 62명을 신설하다.
 -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27명, 피아노전공, 바이올린전공, 첼로전공, 플룻전공, 클라리넷전공, 성악전공, 지휘전공)를 신설하다.
 -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학부로 신학부 67명(신학전공, 종교철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주간 107명, 야간 45명(사회사업학전공(주/야), 산업복지학전공, 노인복지학전공],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27명(피아노전공, 바이올린전공, 첼로전공, 플룻전공, 클라리넷전공, 성악전공, 지휘전공)을 두다.
 - 국제학부 106명(영어영문학전공, 중국어중국학전공, 캐다다학전공)에서 학생정원 40명을 중국학 대학으로 이동 편제하고, 중국어중국학전공을 중국어문전공으로 명칭 변경하여 신설된 중국어-문화학부로 이동 편제하여 국제학부 66명(영어영문학전공, 캐나다학전공)으로 하다.
 - 제 I 대학자율전공계열 60명(신학부, 인문학부, 국제학부)에서 신학부를 폐지하고, 학생정원 40명을 감축하여, 제 I 대학자율전공계열 20명(인문학부, 국제학부)로 하다.
 - 사회과학부 주간 112명, 야간 107명[법학전공(주/아), 행정학전공(주/아), 부동산학전공(주/아)]에서 부동산학전공(주/아)를 부동산·세무학부로 이동 편제하고, 사회과학부 주간 74명, 야간 71명[법학전공(주/아), 행정학전공(주/아)]로 하다.
 - 경영학부 주간 102명, 야간 87명[경영학전공(주/야), 경영정보학전공(주/야), 세무학전공(주/야)]에서 세무학전공(주/야)를 부동산·세무학부로 이동 편제하고, 경영학부 주간 86명, 야간 70명[경영학전공(주/야), 경영정보학전공(주/야)]로 하다.
 - 제Ⅲ대학자율전공계열 주간 60명, 야간 40명[사회과학부(주/아), 사회복지학부(주/아), 경제통상학부(주/아), 경영학부(주/아)]에서 사회복지학부를 폐지하고, 야간 학생정원을 폐지하고, 부동산·세무학부를 포함하여 제Ⅲ대학자율전공계열 38명(사회과학부, 경제통상학부, 경영학부, 부동산·세무학부)로 하다.
 - 전자시스템정보공학부를 전자시스템정보공학부로 명칭 변경하다.
 - 예체능학부 180명(회화/산업디자인전공 80명, 음악학전공 50명, 사회체육학전공 50명)에서 음악학전공의 학생정원 27명을 신설된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로 이동 편제하여 예체능학부 153명(회화/산업디자인전공 80명, 음악학전공 23명, 사회체육학전공 50명)으로 하다. 2005학년도 대학원(교육대학원 제외) 학생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학칙을 정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다.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정원을 50명에서 12명 감축하여 38명으로 하고, 영어영문학과를 폐지하고, 문헌정보학과, 국제통상학과, 전자공학과, 도시건축학과를 신설하다.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정원을 5명에서 10명 증원하여 15명으로 하고, 경영학과와 국어국 문학과를 신설하다.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정원을 30명에서 8명 증원하여 38명으로 하다.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정원을 5명에서 3명 증원하여 8명으로 하다.
 - 실천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정원을 28명에서 2명 감축하여 26명으로 하다.
 - 산업정보대학원을 부동산·행정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학생정원을 30명에서 7명 감축하여 23명으로 하고, 부동산제테크전공을 부동산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자치행정전공을 행정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기술경영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도시환경계획전공, 건축공학전공, 무역정보전공, e-비즈니스전공, 증권재테크전공을 폐지하다.
- 09.16 본교 제 I 대학과 중국 북경대학교 외국어학원간에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9.17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4년도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으로 선정되다.
- 10.01 부설기관으로 용인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다. 부설교육기관으로 한국어교육원을 설립하다.
- 10.15 학교 정문 안내실 신축공사(51.9m²) 준공하다.
- 10.26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11.08 제10대 이사장 방순열 권사 취임하다.
- 11.17 2005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생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다.

발도르프교육전공을 신설하다.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을 폐지하다.

- 11.30 강남대학교 학교기업 응용정보기술을 설립하다.
- 12.03 산학협력단 협력연구소 설립하다.
- 12.21 부속기관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다. 부설연구기관으로 실버산업연구원을 설치하다.
- 2005 02.20 국방부로부터 학생군사교육단 승인 받다.
 - 03.01 행정기구를 4처 1실 17팀(17팀)에서 5처 2실 3센터 16팀으로 개편하여, 경영부총장 및 총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신설하고, 기획처 기획조정팀을 정책기획조정실 대학정책사업개발센터와 예산조정처 예산관리팀으로 분리 및 명칭변경하고, 기획처 대외교류홍보팀을 정책기획조정실 대외교류홍보팀으로 하다.

총무처를 총무인력개발처로 하여 사무행정팀을 총무팀으로 명칭변경하고, 교무처 연구지원팀을 총무인력개발처로 소속 변경하여 교원인력개발팀으로 하고, 총무처 관재시설팀은 시설관리처를 신설하여 시설관리처 관재시설팀으로 하고, 중국학센터를 신설하여 중국학대학 소속으로 하다. 부속기관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교무처로 소속을 변경하여 본부기관으로 하고, 교무처 학사지원팀을 교무처 교무기획팀으로 명칭변경하다. 학생복지처를 학생처로 하여 입학관리팀을 학생처로 소속 변경하고, 취업정보팀은 부속기관인 학생생활상담소와 통합하여 학생처 학생종합인력개발센터로 명칭변경하고, 부설기관인 강남대학교 학교기업응용정보기술을 부속기관으로 하다.

- 03.16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3.18 중국 청도여유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5.18 도예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106,000여평) 매입하다.
- 05.23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신용평가등급 A- 부여받다.
- 05.30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를 부속기관으로 신설하다. 학군단 건물(승리관) 신축공사 착공하다.
- 06.03 캐나다 University of Regina와 학생교류협정 체결하다.
- 06.08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6.21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5년도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으로 선정되다.
- 06.28 대만 개남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7.04 캐나다 Trent University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독일 미트바이다 응용과학대학(Hochschule Mittweida(FH)-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와 국제 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7.20 경기도 및 용인시와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협약 체결하다.
- 08.01 중국사무소를 신설하여 중국학대학 소속으로 하다.
- 08.16 강남대 기숙사 유한회사(SPC) 설립하다.
- 08.19 중국 청도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8.26 200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학칙을 정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다.
 -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의 지휘전공을 폐지하고 비올라전공을 신설하였으며, 국제학부 내에 카자 흐스탄학전공을 신설하다.
 - 단과대학으로 사회복지대학을 신설하여 사회복지학부를 그 소속으로 하다.
 - 신학부를 제I대학 소속으로 하고 제 I 대학 신학부 인원을 15명 감축하여 국제학부로 9명, 제 I 대학자율전공계열로 6명 이동 편제하다.
 - 제Ⅲ대학 경제통상학부 2명을 감축하여 제Ⅲ대학자율전공계열로 이동 편제하다.
 - 제 대학 야간[사회과학부(야), 경제통상학부(야), 경영학부(야), 부동산세무학부(야)] 64명을 감축하여 사회과학부(주)로 1명, 경영학부(주)로 6명, 부동산세무학부(주)로 6명, 제 대대학자율전공계열로 20명 이동편제(총33명)하고, 제 대학자율전공계열로 1명, 사회복지대학 실버산업학부로 23명 이동 편제하며, 7명을 감축하다.
 - 사회복지대학[사회복지학부(주/야]] 27명을 감축하여 실버산업학부로 이동 편제하고, 실버산업 복지학부(50명, 노인보건학전공, 실버산업경영학전공)를 신설하다.
 - 제Ⅲ대학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전자시스템정보공학부, 도시건축공학부에서 19명 감축, 예체능학부 회화/산업디자인학전공, 예체능학부 사회체육학전공에서 11명을 감축하여 예체능학부 음악

학전공으로 12명 이동 편제하고, 18명을 감축하다.

2006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학칙을 정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다.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1명 감축하고, 도시건축학과를 도시환경계획학과로 명칭 변경하다.
- 실천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1명 감축하고, 재활선교전공을 복지선교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다.
- 부동산행정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1명 감축하다.
- 10.01 중국사무소를 중국 북경시에 설립하다.
- 10.1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년도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현지방문평가를 받다.
- 10.25 중국 종산학원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11.03 강남대학교 Complex Center 착공하다.
- 11.14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특수학교 설립계획 승인받다.
- 12.09 대만 카이난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협정 체결하다.
- 12.16 중국 훈춘시 경신진 정부와 국제교류협정 체결하다.
- 12.19 중국 북경 중교국제교육교류중심과 본교 파견 중국 유학생 모집과 교육에 관한 협정 체결하다.
- 12.27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와 복수학위 프로그램 협정 체결하다.
- **2006** 01.19 중국 산동과학기술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 의향서 체결하다. 중국 위해직업기술학원과 교육 및 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1.20 중국 후허하오트어직업학원과 교육 및 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1.31 일본 중앙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교원교류에 관한 각서, 학생교류에 관한 각서 체결하다.
 - 02.15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5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최우수대학" 오모 선정되다.
 - 02.1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학부)에서 "우수대학" 으로 평가받다.
 - 02.28 승리관 신축공사 준공하다.
 - 03.27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와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언어문화연수반 학생들의 한국 강남대학 교 학사학위 유학프로그램' 에 관한 협정 체결하다.
 - 04.12 강남학보 영어판 제1호 발간하다.
 - 04.28 카자흐스탄 카작여자사범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학생교류협정 체결하다. 카자흐스탄 카작경제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학생교류협정 체결하다.
 - 05.02 카자흐스탄 카작국립사범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학생교류협정 체결하다. 카자흐스탄 카작국제관계및세계언어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학생교류협정 체결하다.
 - 05.03 카자흐스탄 유라시안국립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학생교류협정 체결하다.
 - 06.12 중국 산동사범대학교 외국어학원과 '1' 교육합작프로그램 협정 체결하다.
 - 06.30 중국 위해직업기술학원과 교육교류 제1차 보충 협정 체결하다.
 - 07.05 중국 산동연합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정 체결하다.
 - 07.06 중국 치박국제대학교 예비학교와 '1' 교육합작프로그램 협정 체결하다.
 - 07.12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와 '국제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협정 체결하다.
 - 07.25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6년도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으로 선정되다.
 - 08.18 몽골 몽골국립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8.23 2007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학칙을 정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다.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6명을 감축하여 제Ⅲ대학 자율전공계열로 이동 편제하다. 경영학부(주/야)의 경영정보학전공을 폐지하다.
 - 08.30 학교법인 송죽학원과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류 · 협력의향서 체결하다.
 - 09.23 중국 청도가락문리전수학원과 '1' 및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9.25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교와 '아시아아프리카 어문학전공(중한/한중 동시통역과정)' 석사 공동운영 에 관한 협정 체결하다.
 - 10.31 중국청도대학교 경제학원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11.02 하북사범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부설연구기관으로 한국종교과학연구소를 설립하다.

11.03 2007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학칙을 정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다.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를 경영학과와 통합하여 경영학과로 하다.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를 경제통상학과로 명칭변경하다.

일반대학원에 특수교육학과를 신설하다.

- 11.14 중화민국(대만) 타이난과기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2007 01.07 중국 산동성 교주시 제1중학교와 파견 중국 유학생 모집과 교육에 관한 협정 체결하다.
 - 01.19 중국 산동사범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협정 체결하다.
 - 02.16 심전센터(심전산학관 및 심전제2관) 사용 승인받다.
 - 02.23 일본 오이따대학교 국제교류협정, 학생교류협정, 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노동부 주최 '2007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에서 우수대학 선정되다.
 - 02.28 이사장 직무대행 윤성민 취임하다.
 - 03.01 제6대 총장에 윤신일 박사 취임(연임)하다. 부설연구기관으로 아태국제학연구소를 설립하다.
 - 03.08 중국 길림전파전수학원과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중국 길림전파전수학원과 국제교류 협정서 및 1월 및 교육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협정 相 하다.
 - 03.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학년도 학문분야 평가에서 음악학전공 우수대학으로 평가 받다.
 - 04.12 부설연구기관으로 난청재활연구소를 설립하다.
 - 04.24 카자흐스탄 아트라우국립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하다.
 - 04.26 카자흐스탄 Kuat Corporate-강남대학교 간 대학 공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다.
 - 05.01 중국 장춘세무학원과 '교육 교류 프로그램' 에 대한 협정 체결하다.
 - 05.10 부설기관으로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다.
 - 07.25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7년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되다.
 - 08.06 국산동사범대학 외국어학원과 '¼ 교육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협정 체결하다.
 - 09.27 2008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학칙을 정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다.

일반대학원 도시환경계획학과를 도시건축학과로 명칭변경 하다.

일반대학원 문화비평학과를 폐지하다.

교육대학원 발도르프교육 전공을 폐지하다.

- 10.26 북경연합대학교과 '교육 교류프로그램' 에 대한 협정 체결하다.
- 2008 02.05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 에서 유아교육과군에서 최우수, 특수교육학자 군에서 우수대학으로 평가받다.
 - 03.01 단과대학으로 사범대학을 신설하여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를 그 소속으로 하다. 부설연구기관으로 중앙아시아연구소를 설립하다.
 - 03.10 노동부 주최 '2008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에서 우수대학 선정되다.
 - 03.25 한국사회봉사협의회와 2008하계 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 협력기관 협정 체결하다.
 - 06.05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년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연차평가" 를 통해 "5년 연속 4권 대학 특성화 사업" 에 선정되다.
 - 06.27 독일 인증위원회(ACQUIN)로부터 복수학위 인정에 대한 독일 국제 인증서 획득하다.
 - 07.31 부설기관으로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을 설립하다.
 - 08.01 행정기구를 2실 5처 4센터 16팀 1감사관에서 2실 4처 5센터 9팀으로 개편하여 비서팀을 전략지 원조정실로, 감사관을 법무감사팀으로, 정책기획조정실과 예산조정처를 통합하여 기획처로, 정책 사업개발센터와 예산관리팀을 기획예산팀으로, 대외교류홍보팀과 중국학센터를 글로벌센터로, 시설관리처를 총무처로, 총무팀을 총무회계팀으로, 교원인력개발팀을 인력개발센터로, 교무기획팀과 단과대학 교학팀을 통합하여 학사지원팀으로, 학생종합인력개발센터를 취업정보센터로, 전산정보팀을 전산정보원으로, 입학관리팀을 학생선발센터로 명칭변경하고, 평생/어학교육팀을 평생

교육팀으로, 한국어교육원을 어학교육원으로 하다.

- 08.14 2009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학칙을 정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다.
 - 부총장 직속으로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18명과 자율전공학부 30명, 실버산업학부 실버산업학전 공에 50명의 정원을 편제하다.
 - 제 I 대학 신학부, 인문학부, 제 I 대학자율전공계열은 인문대학, 국제학부는 국제학대학 소속으로 한다.
 - 인문대학은 신학과 35명, 철학과 33명, 국어국문학과 39명, 문헌정보학과 39명, 영문학과 30명으로 정원을 편제하다. 국제학대학은 국제지역학부와 국제통상학과를 두며 국제지역학부에는 캐나다학전공, 카자흐스탄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영미학전공에 53명을, 국제통상학과에 60명으로 정원을 편제하다.
 - 중국학대학은 중국어·문화학과와 중국실용·지역학과를 두며 각각 45명으로 정원을 편제하다.
 - 제 II 대학 사회과학부(주·야간), 경제통상학부(주·야간), 부동산·세무학부(주·야간), 제 II 대학자율전공계열은 사회과학대학으로, 경영학부(주·야간)는 경영대학 소속으로 한다.
 - 사회과학대학에는 경제학과[주간 40명, 야간 30명], 법학과[주간 40명, 야간 28명], 행정학과[주 간40명, 야간 28명], 부동산학과[주간 50명, 야간 30명], 세무학과[주간 44명, 야간 30명]로 정원을 편제하다. 경영대학에는 경영학부 경영학전공으로 주간 100명, 야간 54명으로 정원을 편제하다.
 - 사회복지대학 실버산업학부는 단과 대학 소속을 두지 아니한다.
 - 제Ⅲ대학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전자·시스템정보공학부, 도시·건축공학부, 제Ⅲ대학자율전공계열은 공과대학, 예·체능학부는 예·체능대학 소속으로 한다.
 - 공과대학에는 컴퓨터미디어정보공학부에 컴퓨터공학전공과 미디어정보공학전공 72명, 전자공학과 40명, 산업시스템공학과 34명, 응용수학과 29명, 도시공학과 32명, 건축공학과 32명, 공과대학자율전공학부에 18명의 정원을 편제하다. 예체능대학에는 회화산업디자인학부에 회화전공과산업디자인학전공 73명, 음악학과 35명, 사회체육학과 46명의 정원을 편제하다.

2009 02.19 교무처에 교직팀을 신설하다.

- 02.26 노동부 주최 '2009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다.
- 02.27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최우수대학" 으로선 정되다.
- 04.17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9년도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에 선정되다.
- 07.16 육과학기술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09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신규 자**원**(학 에 선정되다.
- 07.22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2009년 제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에 선정되다.
- 10.21 신종합정보시스템 개통하다.
- 10.28 용인강남학교(특수학교) 기공식 개최하다.
- 2010 04.10 강남대학교 사범대학부설유치원 설립 인가받다.
 - 05.01 강남대학교 사범대학부설유치원 개원하다.
 - 06.10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0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다.
 - 06.23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0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지원바으로 선정되다.
 - 12.30 용인강남학교(특수학교) 설립 인가 받다.
- **2011** 03.01 제7대 총장에 윤신일 박사 취임(연임)하다. 용인강남학교(특수학교) 개교하다.
 - 05.09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1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다.
 - 05.24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1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다.
- **2012** 02.15 '고등교육법및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 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대학기관평가인증' 에서 인증대학으로 인증받다. (인증기간: 5년)
 - 02.29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1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다.
 - 04.12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다.
 - 05.10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2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다.

- 2013 06.11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3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다.
 - 08.02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선정 "2013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자 으로 선정되다.
- 2014 06.17 교육부 선정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다.
- **2015** 01.28 우간다 'Christian University' 와 교류협력을 체결하다.
 - 02.01 수단 'Al Zaiem Al Azhari University' 와 교류협력을 체결하다.
 - 03.18 국립특수교육원 '2014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평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다.
 - 04.15 수단 'The Future University' 와 교류협력을 체결하다.
 - 04.23 우간다 'Martyrs University' 와 교류협력을 체결하다.
 - 07.21 교육부 선정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다.
 - 12.29 201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학칙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다.
 - 부총장 직속으로 독일음악학부 18명과 실버산업학부 실버산업학전공에 47명의 정원을 편제하다.
 - 인문대학은 신학과 30명, 철학과 28명, 국어국문학과 34명, 문헌정보학과 36명, 영문학과 27명으로 정원을 편제하다. 국제학대학은 국제지역학부와 국제통상학과를 두며 국제지역학부에는 캐나다학전공, 중앙아시아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영미학전공에 46명을, 국제통상학과에 56명으로 정원을 편제하다.
 - 중국학대학은 중국어·문화학과와 중국실용지역학과를 두며 각각 40명으로 정원을 편제하다.
 - 사회과학대학에는 경제학과[주간 39명, 야간 30명], 법학과[주간 36명, 야간 28명], 행정학과[주 간39명, 야간 28명], 부동산학과[주간 49명, 야간 30명], 세무학과[주간 42명, 야간 32명], 융복합자율전공학부 3명으로 정원을 편제하다.
 - 사회복지대학에는 사회복지학부 사회사업학전공으로 주간 74명, 야간 52명으로 정원을 편제하다.
 - 경영대학에는 경영학부 경영학전공으로 주간 90명, 야간 65명으로 정원을 편제하다.
 - 공과대학에는 컴퓨터미디어정보공학부에 컴퓨터공학전공과 미디어정보공학전공 66명, 전자공학과 37명, 산업시스템공학과 31명, 응용수학과 25명, 도시공학과 28명, 건축공학과 29명, 공과대학자율전공학부에 10명의 정원을 편제하다.
 - 예체능대학에는 회화·산업디자인학부에 회화전공과 산업디자인학전공 67명, 음악학과 30명, 사회체육학과 41명의 정원을 편제하다.
 - 미래인재개발대학에는 신산업융합학부에 미용뷰티학전공과 건강·유니버설디자인학전공과 금융 정보학전공에 2명의 정원을 편제하다.
- **2016** 01.01 네팔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SHARE THE VISION 해외봉사단' 을 파견하다.
 - 02.22 행정기구 전면 개편으로 2실 6처 4센터 15개 단위부서(팀, 교육원, 행정실), 43개 부속·부설기관을 2실 6처 4센터 14개 단위부서(팀, 추진단, 행정실, 지원부), 38개 부속·부설기관으로 개편(학생역량지원센터와 강남특성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책연구소로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를 신설하고, 총무인력개발처를 인사처로, 시설관리처를 총무처로 하고, 학사지원팀을 교무팀으로, 교직팀을 교직지원부로, 교양교육원을 참인재대학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취업지원팀으로, 서비스행정실을 교학행정1실과 교학행정2실로, 입학사정관팀과 입학관리팀을 입학전형관리팀으로, 글로벌센터를 대외교류센터로, 인력개발팀을 인사팀으로, 총무회계팀을 회계경리팀과 총무구매팀으로, 시설팀과 관재팀을 안전시설팀으로 하고,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을 중앙도서관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글로컬사회공헌센터로,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를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출판부를 폐지하고, 창업보육센터·창업교육센터·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목양어린이집을 부설교육기관으로 용인발전연구센터를 폐지하고, 인문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소·산학기술연구소·아태국제학연구소·국제도예연구소를 교책연구소에서 특별연구소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을 평생교육원으로, 가상대학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통합하다)
 - 06.18 KNU 참인재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다.
 - 09.01 대학특성화사업(CK) 'Wel-Tech기반 융합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2016년~2018년)' 에 선정되다.
 - 12.16 학사경고자 및 학습부진 학생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ABA-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하다.
- **2017** 02.22 2016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2017년 3월~2020년 2월: 3년)으로 선정되다.

08.04 일반대학원 수화언어통번역학과 국내 최초 한국수어교원 자격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의에 합격되다. KOICA 지원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준공하다. 09.18 2018 01.31 전국대학교 대학교육개발센터 혐의회 제16회 동계 심포지엄 - 모든 재학생의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강남 ABA-Leaming 교육 우수 사례에 선정되다. 04.16 국립특수교육원 2017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다. 04.25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년 청해진대학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주관 "학습법 전문가 양성과정 - 강남대학교 학사경고 예방 및 사 05.11 후 관리 시스템 ABA-Learning 교육 체계 우수 사례에 선정되다. 05.18 교육부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에 선정되다. 05.25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2018년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위탁기관에 선정되다. 06.07 국립국제교육원 "2018년 교원 해외파견 사업 단기 해외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선정되다. 07.18 학생역량통합관리를 위한 KNU 참인재 시스템 구축 완료하다. 08.23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다. 11.27 경인지역 14개 대학 간 복수학위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다. 2019 04.03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2019년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위탁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다. 05.08 교육부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되다. 05.27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남녀고용평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다. 09.04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하는 '2019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자격모니터링 결과 인증유지' 를 획득하다. 10.23 융복합대학원에 '문예창작학과' 를 개설하다. 10.31 KSA한국표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다. 2020 03.01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인문사회관 1층에 학생성공센터를 구축하다. 03.19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2020년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위탁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되다. 04.29 ㈜우리금융지주(회장 손태승)와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다. 04.14 산학협력단, 화성시 동탄장애아동 재활센터 민간 위탁사업 성과평가 1위 달성하다. 05.28 교육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에 선정되다. 11.20 산학협력단, 경기도 하남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다. 12.10 산학협력단, 군포시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다. 12.17 산학협력단, 용인시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다. 2021 03.01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다. 03.16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재 체결하다. 03.18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되다 03.29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도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기관(남부)으로 선정되다. 05.26 경기도 교육청 2021상반기 정교사1급 및 특수교육 정교사1급 자격연수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다. 05.27 세종특별자치시 2021상반기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자격연수 위탁 연수기관으로 선정되다. 09.03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으로 최종 선정되다. 09.29 2021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등급 ' 및 인센티브 지원이 확정되다. 10.26 2021년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 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으로 선정되다. 2022 01.14 산학협력단, 경기도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재 선정되다. 교육부 2022년 장애대학생 진로 ·취업 지원 사업 인천 ·경기 거점대학으로 선정되다. 02.23 02.28 고용노동부 20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기관으로 선정되다. 04.05 산학협력단, 용인시립구갈어린이집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다. 04.07 2022년도 고령친화산업 디지털전환(DX)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다. 05.06 창업보육센터, 2022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 달성하다. 05.12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와 인공지능전공 2022년 공공조달 연계 R&D 실증·사업화 지 원사업 선정되다. 05.30 강남대학교,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되다.

- 06.21 강남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반도체 전 공트랙(소재·부품·장비)' 선정되다.
- 11.29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 획득하다.
- 11.29 산학협력단 위탁 하남시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하다.
- 12.27 평생교육원, 2023년 아이돌보미 양성.보수 교육기관 선정되다.
- **2023** 01.30 산학협력단, '2023년 사회경제 선도대학' 최종 선정되다.
 - 03. 반도체트랙사업의 일환으로 반도체시스템융합전공 신설하다.
 - 05.10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사업 선정되다.
 - 05.10 2022년도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반도체전공트랙) 평가 결과 S등급(최고등급) 획득하다.
 - 05.18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우수대학' 선정되다.
 - 06.19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송파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되다.
 - 07.11 학교기업 아동청소년발달센터,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산하 경기용인기초학습지원센터 느린학습 자(경계선 지능) 지원 제공기관 선정되다.
 - 08.22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사업 선정되다.
 - 10.31 불가리아 교육과학부, 대사관, 대학(세계경제대, 소피아대, 벨리코 트르노보대) 방문 및 교류협약 체결하다.
 - 11.03 평생교육원, 고용노동부 2024년 아이돌봄 양성과정 훈련기관 선정되다.
 - 11.08 산학협력단, 위탁운영 시립구갈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하다.
 - 11.18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 하다.
- **2024** 01.26 산학협력단, 법정수어통역 교육·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사업 선정되다.
 - 02.16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선정되다.
 - 02.23 고용노동부 2024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되다.
 - 02.26 2024년도 디지털 새싹 사업 선정되다.

Kangnam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학교법인 강남학원 정 관

학교법인 강남학원 이 사 회 임원명단

학교법인 강남학원 사 무 국 직원명단

학교법인 강남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3.03.28, 2014.10.17>

[개정 2014.10.17]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강남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개정 2009.1.8, 2010.9.16, 2011.2.24>

- 1. 강남대학교
- 2.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
- 3. 용인강남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11(대치동)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09.16, 2012.10.24>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신설 2012.10.24]

제2장 자산과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 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 한다.

제9조의2(예산·결산보고 및 공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 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공개는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

제13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회의) (삭제)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8인(이사장 1인 포함)
- 2. 감사 2인
-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개 정 2021.05.14>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③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이사 4년
- 2. 감사 3년
- ② <삭제>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개방이사와 감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로 한다.<개정 2010.9.16>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삭제 2011.01.26.>
-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 ① 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05.11, 2022.11.01.>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 터 6년이 경과한 자

제21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등) 본 법인의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15>

- 1. 본 법인의 건학이념과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자
- 2.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1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 는 2인으로 한다.

제21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 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1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1조의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9.16>
- 1.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2. 대학평의원회에서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3. 용인강남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삭제 2014.10.17.>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 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 정 2020.05.11>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12.10.24>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 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0.24]

제2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 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 · 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 1.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 2. 안건
- 3. 의사
-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 5. 표결수
-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3>
- ④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2항의 공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2020.10.15>, <개정 2021.02.03>
- 1.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⑤ 제4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후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5>, <개정 2021.02.03>
- ⑥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5>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3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 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의2(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및 동문, 학부모, 지역대표, 기독교교회지도자, 교육유공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6, 2020.10.15, 2021.02.03>

- 1.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 3인
- 2.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 2인
- 3. 조교를 대표할 수 있는자 1인
- 4.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1인

- 5. 동문 대표 1명
- 6. 재학생 학부모 대표 1인
- 7. 지역사회 대표 1인
- 8. 기독교교회 지도자 1인
- 9. 교육유공자 1인
-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 장 각1인을 두며,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②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 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6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02.26, 2020.12.22>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부의하는 사항

제36조의2(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의3(회의록 공개)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2.08, 2020.12.22>

제4장 수익사업

제37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08.22>

- 1. 부동산임대업(토지.건물)
- 2. 농장 . 영림사업
- 3. 부동산개발업
- 4. 용역업(경비, 주차, 미화, 건물관리 등)
- 5. 투자사업
- 6. 컨설팅업
- 7. 주차장 운영업

제38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카이로스빌딩을 경영한다. <개정 2020.10.15>

제39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카이로스빌딩의 사무(업)소 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11(대치동)에 둔다. <개정 2020.10.15>

제40조(관리인) ① 제38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 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9.16>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 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 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10.9.16>

제43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0.9.16>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44조(임용)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총장은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용인강남학교장은 4년으로 하고, 유치원장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1.6.20, 2020.05.11, 2022.11.01.>

- ②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이 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그 임기를 마친 경우 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학교의 장이임용하되 이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2, 2019.10.29, 2020.05.11>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단, 본인이 원하는 경 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07.22>

다. 강사 :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만, 「고등교육법」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2. 급여

연봉 및 수당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6.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중 근무기간을 제외한 계약조 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조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의 장이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05.11>

- 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실·처장·본부 장과 그밖의 교원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이 경우 총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03.28>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1.06.20, 2020.05.11>
- ⑧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20.05.11>
- ⑨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마감일 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⑩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로 제한 할 수 있다.
- ①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사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10.29>

제 1 관 임용

제45조(기간제교원)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6.20>

-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06.20>
- ③ 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06.20>

제46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9.16,

2012.10.24, 2013.02.06, 2017.02.08, 2017.08.22, 2020.05.11>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 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 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사에 대하여는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05.11>

제47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2017.02.08>

1.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 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2. 제46조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제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 로 한다.
- 4.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5.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 간으로 한다.
- 6. 제46호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6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 7.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 8. 제46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46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46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 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 11. 제46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 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8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6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9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동항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20.>

- ② 제4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0.>
- ③ 제46조 제1항 제7호와 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신설 2022.12.20.>

제50조(직위해제)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2020.05.11>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 찰 등 수사기관에서조사나 수사중인 사 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 저히어려운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20.05.11>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 ① 제1항 또는 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의 직위해 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제1항 또는 제2항 제3호를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제51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제52조의2(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5.11>

-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 선동한 때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05.11>

제53조(명예퇴직수당) ①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재직 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용인강남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9.16>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5조(교원인사위원회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5.11>

제5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5.11>

-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제44조제3항에 의한 계약제 임용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사항
-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과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에 대하 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교내 · 외의 봉사활동 실적

- 5. 창학이념 구현 노력
- 6. 계약시 명시된 (재)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

제57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강남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하며, 용인강남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감과 4인의 교원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58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9.16>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0.9.16>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9.16>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61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약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9.16>

제62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01.>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강남대학교에 한정)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1.01.>
-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법인의 이사
-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학교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하 '외 부위 원' 이라 한다)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용인강남학교의 경우로 한정)
-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01.>
- 1. 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부위원을 최소 2인 이상 포함할 것(단, 용인강남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학부모위원 1인 포함)
- 3.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법인 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강남대 학교에 한정)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 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

- 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성희롱 행위등 성(性)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0.05.11>
- 제66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7조(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 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68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제6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0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05.11>
-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 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22.11.01.>
- ⑥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01.>

제71조(징계의결시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2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2. 공금을 횡령 · 유용한 경우
-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소속 직원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73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82조(삭제)

제83조(삭제)

제84조(삭제)

제85조(삭제)

제86조(삭제)

제87조(삭제)

제88조(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9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직원(기능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 원" 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05.11>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0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한)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 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91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 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

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95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 직원으로 보한 다.

- ② 법인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 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6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부총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5.10.21,, 2016.02.03, 2016.05.17.>
- ④ <삭제 2016.02.03.>
- ⑤ 총장의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2.03.>
- ⑥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둔다. <개정 2015.10.21.>
- ① 총장직속기구로 인권센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05.12]

제96조의2(학장,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단과대학에 학장을,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다만,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학부의 경우 부총장이 교무를 통할한다.<개정 2016.02.03>

제97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비서실, 교목실, 기획처, 재무본부,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인사처, 총무처를 둔다. <개정 2017.03.28, 2020.10.15>

- ② 교목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목사교원 또는 5급(과장) 이상의 목사직원으로 보하고, 비서실장, 기획처장, 재무본부장, 인사처장, 총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과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또한 비서실, 교목실, 기획처, 재무본부,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인사처, 총무처에는 부실·처·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5급(과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03.28, 2019.10.29, 2020.10.15, 2021.02.03>
- ③ 교목실의 교목은 조교수 이상의 목사교원 또는 별 정직 목사로 보한다.
- ④ 부총장 및 각 실·처·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단(원), 센터를 두며, 단(원)에는 부단(원)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단(원)장과 부단(원)장,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5급(과장)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계장)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단,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단(원)장은 특별계약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2019.10.29, 2021.02.03, 2021.05.14, 2021.12.17.>

1. 단(원): 대학교육혁신단

- 2. 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마음나눔센터, IR센터, 대외교류센터, 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⑤ 부총장 및 실·처·본부에는 감사팀, 교무팀, 장학복지팀, 입학전형관리팀, 기획예산팀, 인사팀, 회계경리팀, 총무구매팀, 안전시설팀을 두며, 팀장은 6급(계장)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03.28, 2020.10.15, 2021.02.03>
- ⑥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를 두며, 각 지원부에는 지원부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5급(과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0.15>, <개정 2021.02.03, 2021.05.14.>

[개정 2023.05.12]

제97조의2(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대학 원,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부를 둘 수 있다.

②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부의 경우 사무분장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97조의3(하부조직의 운영) 제97조 및 제97조의 2에 의한 하부조직의 운영 및 분장업무는 학교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02.03>

제98조(부속 및 부설기관 등)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두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 ② 부속 및 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 및 부설 기관의 장은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 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장은 내·외부 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6.02.03>
- ③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부속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삭제 2014.10.17.>

제99조(도서관) <삭제 >

제3절 유치원

제100조(원장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1인을 둔다.

-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7급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용인강남학교

제101조(교장 등) ① 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02조(하부조직) 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5절 정원

제103조(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6.05.17, 2019.02.14, 2020.12.22>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04조(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용인강남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1.01.>

제10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2]

제106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

-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 기가 6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교원 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당해 학교 교원 중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 약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0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0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② 교원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9.16]

제109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 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보다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1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②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6]

제1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

[본조신설 2010.9.16]

제112조(회의 및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 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 으로 정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 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13조(소위원회의 설치)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14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15조(의안의 제출.발의 등) ①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6]

제117조(운영경비)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18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9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용인강남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 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06.20>

[본조신설 2010.9.16]

제120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영 제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 권고(이하 "심의 등" 여차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 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안전 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 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 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6]

제1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 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 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 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2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2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 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24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6]

제125조(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9.16]

제1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6]

제127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보상 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 인권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 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요구 등 인 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6]

제12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6]

제129조(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3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6]

제10장 기금운용심의회

제13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법인과 대학교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0.10.15>

제132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이 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대학교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인 이상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 5 제4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12.18]

제1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임기)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13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0.10.15]

제11장 청렴의무 등

제135조(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01.>

제136조(사학기관 행동강령) 제135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1.>

제12장 보칙

제137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22.11.01.>

제13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01.>

제139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1.01.>

단기 4282년 6월 26일 (서기 1949년)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기	주 소
이 사 장	정 일 형	1904. 2.23	3	종로구 청운동 89-5
이사	이 호 빈	1898. 5. 2	3	중구 오장동 43
이 사	핏 치		3	
이 사	변 성 옥		3	
이 사	차 재 윤	1896. 9.28	3	수원시 남수동 105
이 사	이 환 신	1902. 1. 8	3	서대문구 신촌동 70-195
이사	유 형 기	1897.11.17	3	서대문구 북아현동 1-390
감 사	문 창 모	1906. 4.23	2	서대문구 충정로 3 가 30
감 사	조 응 천	1895. 5.13	2	중구 수하동 6

부 칙

(1) 서기 1964년 1월 18일 조직,변경 학교법인 중앙재 단 (1차 변경 허가) 대학 1040.3-112(1964.1.18) 대학 1040.3-1632(1970.9.11) 제13조(임원의 임기) 대학 1040-535(1974.7.10) 제12조,제13조,제14조,제25조,제26 조,제31조 대학 1040-1262(1975.10.5) 제28조,제31조의 2,제31조의 3,제32조,제33조,제35조의1 대학 1040-866(1976.5.26) 제1조,제2조 대학 1040-1095(1976.7.3) 제3조 대학 1040-1689(1977.11.8) 제10장,제11장,부칙,별표12,별표2 대학 1040-559(1979.4.18) 제4조 대학 1042.3-1938(1984.10.29) 제21조의2,제25조의5,제38조,제53조의1,제54조의1,제72 조의4,제76조의1,제98조의 1,2,3,4,5,6,7, 부칙의 ⑧ 대학 25422-312(1985.2.26) 제2장 3절,제3조,제53조의1,제7장 3절,제98조의 1,2,3,6 부칙의 대학 25422-735(1986.7.3) 제10조,제2장,제13조 내지 제21조, 제25조의③,제27조의②,제31조의②,제86조 대학 25422-733(1987.5.26) 별표2 대학 25414-283(1988.3.8) 별표1,2 대학 25423-501(1989.5.20) 별표 2 대학 25422-99(1990.2.1)제3조,제27조,제34조,제35조,제51조,제 75조,제2절81,82,83조,별표1,2 대학 25422-1103(1990.10.31) 제3조,제2장3절,제20조,제21조,제 22조,제25조,제27조,제31조,제3장제3절 25422-184(1991.2.25) 제97조 대학 25422-847(1991.8.27) 제94조 대학 25422-601(1992.4.2) 제3조,제5조,제33조,제

35조,제36조,제41조,제2절 대학 81422-101(1993.1.21) 별 표 2 대학 81422-2310(1993.11.13) 제33조,제37조,제44 조,제56조,제96조,제97조,제98조,별표 2 대행 81422-2440(1994.12.13) 제97조,제98조,제101조중 별표 2 (2) 1.(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 다.2.(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 다.다만,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3.(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 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4.(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 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5.(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 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 의 사무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 로 본다.6.(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 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 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7.(일반직 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 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 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대에 는 채용하지 못한다.

- (3) 이 정관은 198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정관은 198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5) 1.(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당시 재임중인 이사는그 임기 만료시기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 (6) 이 정관은 198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정관은 198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8) 1.(시행일) 이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강남사회복지학교 소속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

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강남대학의 소속교원과 직원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3.(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강남사회복지학교는 199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9) 1.(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2.(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강남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3(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니 위원은 이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4.(일반직원에 대한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니 위원은 이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4.(일반직원에 대한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정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대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10) 이 정관은 199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정관은 199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12) 1.(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의 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13) 이 정관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1.(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2.(폐지되는 학교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강남사회복지학교는 1999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15) 이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정관은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7) 이 정관은 199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18) 이 정관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9) 이 정관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0) 1.(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

다2(교원 ·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강남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3. (강남대학교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 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강남 대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 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4.(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 치) 이 정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이후 임용되는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임용 · 보고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재직중 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 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가. 교 수 : 정년까지 나. 부 교 수 : 6년 다. 조 교 수 : 4년 라. 전임강사 : 2년

- (21) 이 정관은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22) 이 정관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3) 이 정관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4) 이 정관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5) 1.(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2.(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정관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임할 수 있다.
- (26) 이 정관은 2006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7)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8) 이 정관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9) 이 정관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30) 이 정관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 제53조의 개정 규정과, 제8장 및 제9장의 규정은 용인심전학교 개교 이후 시행한다.②(최초의 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③(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 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구성하 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 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 교장이 정한다.

- (32) 이 정관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33) 이 정관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34)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35)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 다.(2011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5차 이사회 의결) 제103조 별표2
- (36)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 다.(2012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2차 이사회 의결) 제90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03조 별표2, 별표4
- (37)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44조 제3항
- (38)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 다.
- (39)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40)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 다.
- (41) 이 정관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42)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 (43)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2015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5차 이사회 의결) 제96조제3,4,5항, 제96조의2제3항, 제97조제1,2,4,5항, 제97조의3, 제98조제2항
- (4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② (용인강남학교 일반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2016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1차 이사회 의결) 제96조 제3항, 제103조 별표4
- (45)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16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3차 이사회의결) 제4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2항, 제63조제1항부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3조의 신설, 제97조제1항,

제2항

- (46)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16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4차 이사회 의결) 제 46조, 제46조7호, 7의2호, 12호, 제47조1호, 6의2호, 10호, 11호
- (47)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17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1차 이사회의결) 제44조제6항, 제50조제2항3호 및 제7항, 제9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48)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7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4차 이사회 의결) 제37조제7항, 제46조제1호
- (49)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017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7차 이사회 의결) 제34조제1항, 제2항, 제35조, 제36조의3, 제50조 제8항, 제52조의2
- (50)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18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4차 이사회 의결) 별표4
- (5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19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4차 이사회 의결) 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11항, 제97조 제2항 및 제4항
- (5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20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 원 제1차 이사회의결) 제21조제8항제3호, 제27조제2항 및 제5호, 제1관, 제44조제1항 및 제3항,제5항,제7항,제8항, 제46조제1항, 제2항, 제5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52조의2제1항, 제2항, 제55조, 제56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70조 제2항,제3항, 제72조, 제89조제1항제1호② (경과조치) 이 정관개정 이전에 임용된 강사의 경우도 이 개정 정관을 적용한다.
- (53) 이 정관은 2020년10월15일부터 시행한다.(2020학년 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2차 이사회 의결) 제21조의2, 제32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 제33조의2 제1항 및 제1항 제3호, 제38조, 제39조, 제97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10장 및 제131조부터 제134조, 제11장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

(54)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2020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3차 이사회 의결) 제32조 제1항 신설, 제36조, 제36조의3, 별표2 변경(55)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2020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4차 이사회 의결) 제32조 제3항, 제4항, 제5항 변경, 제33조의2 제1항변경, 제97조 제2항, 제4항, 제9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97조 제5항, 제6항 변경, 제132조 제2항 변경, 별표1 변경

- (56) 이 정관은 2021년 05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 (57)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21학년도 학교법인 강남학원 제3차 이사회 의결) 제96조제7항 신설, 제97조 제2항, 별표1 변경
- (58) 이 정관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59)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60) 이 정관은 2023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61)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정관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제1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1호에 따라 제1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법인 직원 정원표 강남대학교 일반직원 정원표

총계	24 명
일반직계	15 명
2급	1명
3급	2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직계	9명
5등급	1명
6등급	2명
7등급	2명
8등급	2명
9등급	2명

총계	134 명
일반직계	80 명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계	23 명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기능직계	20 명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별정직계	11 명
5급대우 6급대우 7급대우 8급대우 9급대우	

유치원 일반직원 정원표

총계	5 명
일반직계	3 명
- 7급	1 명
8급	1 명
9급	1 명
기능직계	2 명
10등급	2 명

<별표 4>

용인강남학교 일반직원 정원표

_총계	13 명
교육행정직	3 명
5급	1 명
6급	1 명
7~9급	1 명_
시설관리직	3 명
9급	3 명
운전직	5 명
9급	5 명
조리직	2 명
9급	2 명

학교법인 강남학원 이 사 회 임원명인

직 위	성 명
이 사 장	정대인
상임이사	김경진
개방이사/교육이사	김종진
교육이사	유승익
이 사	봉후종
이 사	윤신일
이 사	한성권
개방이사/교육이사	김범환
개방감사	한수연
감 사	김경석

학교법인 강남학원 사 무 국 직원명단

성 명
신동영
유승옥
박현주



Kangnam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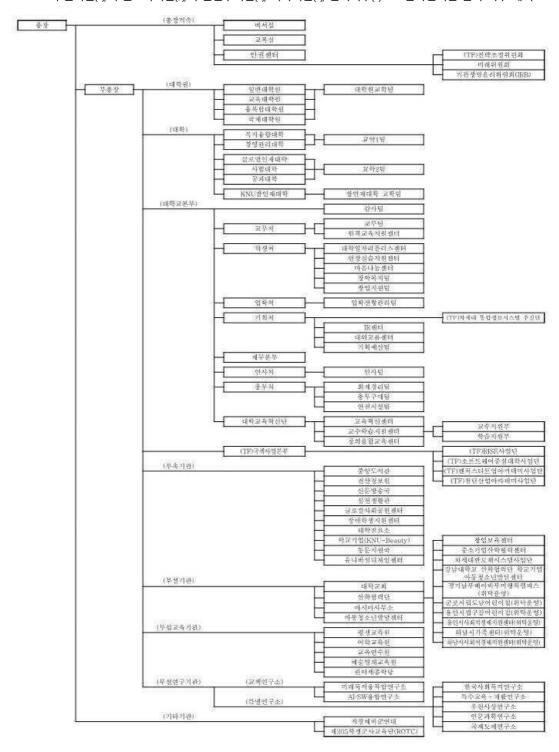
강 남 대 학 교 운영기구표(조직)

강 남 대 학 교 대학/대학원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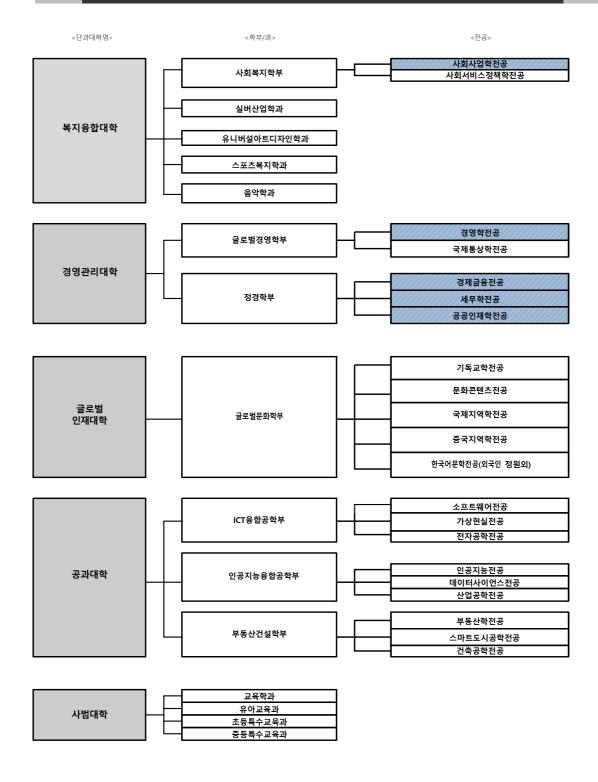
구 성 및 직 제

강남대학교 운영기구표(조직)

총장직속:실(2),센터(1), 대학:교학팀(3), 대학원:교학팀(1), 대학교본부:처(6),본부(1),센터(9),단(1),지원부(2),팀(10), 부속기관(10), 부설기관(4), 부설교육기관(5), 부설연구기관(7), 기타기관(2), 임시기구(7), ※ 산학협력단 산하 기구 제외



강남대학교 대학/대학원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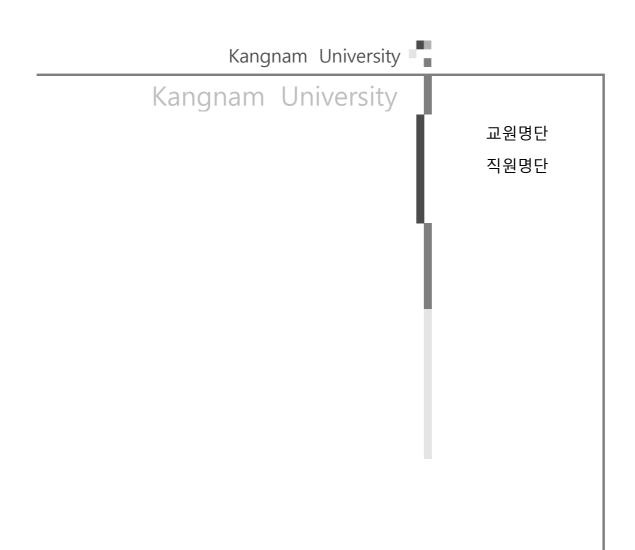
구성 및 직제

· 본 부			
총 장 부 총 장 교목실장 기획처장 인사처장	윤신일 전병찬 윤승태 강현우 윤석진	총무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하상수 유원석 이상호 최유진
- 교무위원			
총 장 부 총 장 교목실장 비서실장 일반대학원장 융복합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사범대학장 복지융합대학장 공과대학장 경영관리대학장 글로벌인재대학장	윤신일 전병찬 윤승태 이홍직 이준우 안귀여루 최승수완 김근근호 박노식	인사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중앙도서관장 전산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KNU참인재대학장	윤석진 강현우 하상석 이상호 이상호 안정종 수환 김경현규
- 대 학 원			
일반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국제대학원장 융복합대학원장	이홍직 안귀여루 윤종수 이준우	일반대학원교학부장 교육대학원교학부장 국제대학원교학부장 융복합대학원교학부장	임성철 조안나 서정우 김행숙
- 대 학			
복지융합대학장 사회복지학부장 사회복지학부장(야) 실버산업학과장 유니버설아트디자인학과장 음악학과장 스포츠복지학과장 경영관리대학장 글로벌경영학부장(야) 정경학부장 융합자율전공학부장(야)	김수 원지 희철 이 김소새세 근 호 한 준호 준 한 준 한 준 한 준 한 준 준 한 준 준 한 준 준 한 준 준 한 준 한 준 한 준 한 준 한	KNU참인재대학장 교양학부장 교양교수부장 글로벌인재대학장 글로벌문화학부장 공과대학장 ICT융합공학부장 인공지능융합공학부장 부동산건설학부장 사범대학장 교육학과장 유아교육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임헌규 임아호배 각도시경 임구대대우 소문에 시승제 인사 이 최 유 제안나 민

- 부속기관			
중앙도서관장 전산정보원장 신문방송국장 심전생활관장 글로컬사회공헌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안정호 윤종수 강유정 김종대 김호연 김호연	대학진료소장 학교기업(KNU-Beauty)대표 동문지원국장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이상호 서경환 공 석 고계원 서경환
- 부설기관			
대학교회담임목사 산학협력단장 아시아사무소장	윤승태 서경환 김종대	아동청소년발달센터장 사범대학부설유치원장	손수민 박희숙
- 부설연구기관			
미래복지용복합연구소장 AI·SW 융합연구소장 한국사회복지연구소장 특수교육·재활연구소장	임정원 안정호 전호성 공 석	우원사상연구소장 인문과학연구소장 국제도예연구소장	박노식 공 석 공 석
- 부설교육기관			
어학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예술영재교육원장 교육연수원장 린이세종학당	김종대 김경호 권새롬 안귀여루 김종대		
- 기타기관			
직장예비군연대장 제205학생군사교육단장 	신영일 정중채		

<2024.03 기준>





교원명단

🖊 전임교원

2024.03 기준

부서	성명	직급	세부전공	채용시전공	학위종별	^{2024.03} 기교 학위코드
교육대학원	안귀여루	교수	학교상담(임상심리학)	상담(상담심리)	문학	박사(Ph.D)
교육대학원	김재옥	교수	언어병리학	speech disorder(말장애)	이학	박사(Ph.D)
국제대학원	LI XUECHENG	 부교수	경제학	국제경영 및 무역	경제학	석사
국제대학원	서정우	<u>· · ·</u> 조교수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윤찬중	교수	사회(노인)복지방법론	사회(노인)복지방법론	사회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최종혁	교수	산업복지학	산업복지실천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부	한동우	교수	사회복지학	산업복지정책 및 조사분석	문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김근홍	교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철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이효선	교수	사회복지사회교육	사회복지방법론	철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박화옥	교수	임상사회사업	임상사회사업	사회복지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임현승	교수	임상사회사업	장애인복지	철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이홍직	교수	사회복지조사 및 자료분석	사회복지조사 및 자료분석	철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	재활복지	장애인복지	문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김수완	교수	사회보장분야	사회보장분야	사회복지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원지영	교수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	사회복지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최희철	교수	사회복지임상	사회사업방법론(정신보건)	사회복지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김민정	교수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임정원	교수	사회사업	사회복지임상	철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전호성	교수	사회복지정책(거시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학	박사(Ph.D)
사회복지학부	천덕희	부교수	임상사회사업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학	박사(Ph.D)
스포츠복지학과	이세호	교수	스포츠경영학	사회체육	이학	박사(Ph.D)
스포츠복지학과	이상호	교수	체육교육	운동과학(노인,장애인체육)	체육학	박사(Ph.D)
유니버설아트디자 인학과	김세은	교수	회화전공	서양화(입체와설치미술)	미술학	박사(Ph.D)
유니버설아트디자 인학과	고계원	부교수	Media Arts and Sciences	시각디자인전공	공학	석사(M.A)
유니버설아트디자 인학과	김소영	조교수	섬유미술	광고,편집,크리에이티브디 자인	미술학	박사(Ph.D)
유니버설아트디자 인학과	김경주	조교수	시각디자인	기초시각 및 편집디자인	디자인학	박사(Ph.D)
유니버설아트디자 인학과		부교수	Interactive Telecommunica	유니버설 제품지다인	디자인학	석사
유니버설아트디자 인학과	송재연	조교수	디자인학	영상편집디자인 및 3D모젼그래픽디자인	디자인학	박사(D.Des)
음악학과	오지현	교수	피아노	피아노	음악학	석사

부서	성명	직급	세부전공	채용시전공	학위종별	학위코드
음악학과	조부환	교수	클라리넷	클라리넷	음악학	석사
음악학과	마티아스루프트	부교수	클라리넷	클라리넷	음악학	석사
음악학과	최자영	부교수	Composition 작곡	작곡	음악학	박사(Ph.D)
음악학과	권새롬	부교수	첼로	관현악 (첼로)	음악학	박사
음악학과	손혜수	부교수	성악	성악	음악학	박사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	여성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철학	박사(Ph.D)
실버산업학과	이성철	교수	마케팅	실버경영일반	경영학	박사(Ph.D)
실버산업학과	김병준	교수	재무론	재무관리	경영학	박사(Ph.D)
실버산업학과	홍승연	교수	노인보건	노인건강	보건학	박사(Ph.D)
실버산업학과	김정근	부교수	Gerontology	사회복지(노인전공),경제학	사회복지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민상훈	교수	국제기업론	무역이론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오세진	교수	생산관리 및 품질경영	생산관리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이우채	교수	경영학	국제마아케팅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방명하	교수	경영정보(MIS)	텔리커뮤니케이션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전병찬	교수	경영정보시스템(MIS)	경영정보학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윤종수	교수	경영정보학	MIS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고인곤	교수	마케팅	마케팅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박종혁	교수	인사조직	인사조직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박근호	교수	국제경영	국제통상/국제경영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한준구	부교수	경영관리	인사조직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임성철	부교수	무역경영	무역실무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권오진	부교수	회계	재무회계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허경선	조교수	회계학	회계학전공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강민	조교수	경영학	재무관리	경영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박정준	조교수	국제통상	국제무역이론	정책학	박사(Ph.D)
글로벌경영학부	김현도	조교수	경영공학	외환 및 국제재무	공학	박사(Ph.D)
정경학부	박일렬	교수	세무정책론	세무정책론	경제학	박사(Ph.D)
정경학부	서병학	교수	금융론	재정금융	경제학	박사(Ph.D)
정경학부	성용운	교수	세무회계	세무회계	세무학	박사(Ph.D)
정경학부	차혜경	교수	국제금융	국제금융	경제학	박사(Ph.D)
정경학부	유호림	교수	중국세무학	중국세무학	경제학	박사(Ph.D)
정경학부	유원석	부교수	재무경제학	재무경제학	경제학	박사(Ph.D)
정경학부	정진용	조교수	미시경제	수리 · 계량경제	경제학	박사(Ph.D)

부서	성명	직급	세부전공	채용시전공	학위종별	학위코드
정경학부	두서영	조교수	회계학	세무회계	경영학	박사(Ph.D)
정경학부	정혜윤	조교수	경제학	응용미시경제 또는 계량경제	경제학	박사(Ph.D)
정경학부	황인규	조교수	법학	조세법	법학	박사(Ph.D)
정경학부	유주선	교수	회사법	상법	법학	박사(Ph.D)
정경학부	김명환	교수	조직론	행정학	행정학	박사(Ph.D)
정경학부	이맹주	교수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이론	행정학	박사(Ph.D)
정경학부	윤석진	부교수	공법학	공법학	법학	박사(Ph.D)
정경학부	최유진	부교수	도시행정학	지방자치 및 도시정책	행정학	박사(Ph.D)
정경학부	임은옥	조교수	Policy. Planning and Dévelopment	행정학전공	정책학	박사(Ph.D)
정경학부	이겨레	조교수	Public Affairs	행정	행정학	박사(Ph.D)
정경학부	윤주희	조교수	법학	민법	법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박노식	교수	신학	신학	신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백소영	조교수	기독교사회윤리학	기독교사회윤리학	신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김승윤	교수	근대영문학	영미문학평론	문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김행숙	교수	현대문학	현대문학(시창작)	문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박재은	부교수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교육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강유정	부교수	현대소설	현대소설(비평)	문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안진경	조교수	영상미디어	영상미디어	문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정승화	조교수	신문방송학	광고홍보 및 문화콘텐츠제작	언론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전창의	조교수	문화기술학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공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윤현정	조교수	영상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기획	문화산업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박광희	교수	정치학 이론	중국학	정치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조찬수	교수	국제정치경제	캐나다 정치,경제	정치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송용호	교수	중국경제	중국경제	경제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리판	부교수	중국어회화	중국어회화	문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김종우	교수	중국경제법	중국경제 또는 중국법	법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김대익	부교수	영어회화	영어회화	문학	박사(Ph.D)
글로벌문화학부	김종민	부교수	노어노문학	카자흐스탄학전공	문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조승호	교수	전산과학	운영체제	이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김태권	교수	데이타베이스	데이타베이스	이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양재형	교수	프로그래밍언어	프로그래밍언어론	공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최인엽	조교수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박정수	조교수	융합소프트웨어학	정보보호	공학	박사(Ph.D)

부서	성명	직급	세부전공	채용시전공	학위종별	학위코드
ICT융합공학부	이채준	조교수	RF회로설계	RF회로설계	공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강현우	교수	디지털신호처리	소프트웨어공학및 멀티미디어	공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최권택	부교수	컴퓨터 비전 및 패턴인식	Computer Science	공학	박사
ICT융합공학부	배성근	부교수	통진 및 신호저리. 임베니느 시스템	통신 및 신호저리, 임베디드 시스템	공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최웅	부교수	지능시스템과학	가상현실/증강현실	공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서경환	교수	초고주파 및 안테나	전자기파	공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김무진	부교수	전자 · 전기공학전공	반도체공학	공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김구성	부교수	재료공학	전자공학	공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황선령	부교수	응용물리	정부사업및기업연계시원 사업관리	이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신승우	조교수	재료공학	전자공학	공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김창현	조교수	전기공학	자동제어시스템 및 회로	공학	박사(Ph.D)
ICT융합공학부	김지훈	조교수	정보통신융합	디지털시스템 및 영상처리	공학	박사(Ph.D)
인공시능융합공학 부	안정호	교수	멀티미디어응용	멀티미디어응용(미디어공 학)	공학	박사(Ph.D)
인공지능융합공학 부	김대범	교수	물류시스템공학	물류시스템공학	공학	박사(Ph.D)
인공시능융합공학 부	최정상	교수	CIM 및 컴퓨터응용시스템	CIM 및 컴퓨터응용시스템	공학	박사(Ph.D)
인공시능융합공학 부	김진묵	교수	정보학	정보학	도서관학	박사(Ph.D)
인공지능융합공학 부	박민수	부교수	정보학	문헌정보학	정보학	박사(Ph.D)
인공지능융합공학 부	곽찬희	조교수	경영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빅데이터	경영학	박사(Ph.D)
인공지능융합공학 부	서지훈	조교수	컴퓨터공학	데이터사이언스	공학	박사(Ph.D)
인공지능융합공학 부	이준석	조교수	산업경영공학	데이터사이언스	공학	박사(Ph.D)
부동산건설학부	김경호	교수	계획설계	계획및설계(건축사소지자)	공학	박사(Ph.D)
부동산건설학부	김종석	교수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계획 및 설계	공학	박사(Ph.D)
부동산건설학부	김근영	교수	도시계획학 및 GIS	교통계획 및 GIS	공학	박사(Ph.D)
부동산건설학부	서충원	교수	부동산개발기술	부동산기술	공학	박사(Ph.D)
부동산건설학부	윤준선	교수	건축시공 및 재료	건축시공	공학	박사(Ph.D)
부동산건설학부	박혁서	교수	경제동태분석	부동산경제학	경제학	박사(Ph.D)
부동산건설학부	하상수	교수	건축구조	건축구조	공학	박사(Ph.D)
부동산건설학부	박우평	부교수	건축공학	건축설계	건축학	박사과성수 료
부동산건설학부	이성찬	부교수	환경 및 설비전공	건축설비	공학	박사(Ph.D)
부동산건설학부	이제우	조교수	법학	부동산법	법학	박사(Ph.D)
부동산건설학부	강지원	조교수	부동산학	부동산조세,회계,자산관리	부동산학	박사(Ph.D)
부동산건설학부	김선영	조교수	도시설계	도시설계	도시계획학	박사과성수 료
부동산건설학부	김천일	조교수	도시 및 지역계획	스마트도시재생 및	도시계획학	박사(Ph.D)

부서	성명	직급	세부전공	채용시전공	학위종별	학위코드
부동산건설학부	 박근오	조교수	도시계획	도시이용계획 스마트 도시방새 및 점단 도시안전	공학	박사(Ph.D)
교육학과	 김철주	교수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학	박사(Ph.D)
교육학과	유제민	교수	임상심리학(발달정신병리학)	심리학	문학	박사(Ph.D)
교육학과	이희숙	교수	교육행정	교육경제학 및 교육사회학	교육학	박사(Ph.D)
교육학과	 전경희	부교수	교육측정 및 통계	교육측정 및 평가	교육학	박사(Ph.D)
교육학과	김정연	조교수	평생교육학	평생교육	교육학	박사(Ed.D)
유아교육과	박희숙	교수	영유아교육	영유아교수학습방법,영아 교육	문학	박사(Ph.D)
유아교육과	손수민	교수	유아교육	유아발달교육	교육학	박사(Ph.D)
유아교육과	조안나	부교수	유아교육	유아교육	교육학	박사(Ed.D)
유아교육과	박선혜	부교수	유아교육	유아교육	교육학	박사
유아교육과	장정윤	조교수	유아교수학습방법	유아수학교육, 유아과학교육	문학	박사
초등특수교육과	이재욱	교수	심신장애학	정서,학습장애	교육학	박사(Ph.D)
초등특수교육과	최승숙	교수	경도 및 학습장애	특수교육	철학	박사(Ph.D)
초등특수교육과	김은하	부교수	정신지체전공	특수교육학	특수교육학	박사(Ed.D)
중등특수교육과	김호연	교수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	교육학	박사(Ph.D)
중등특수교육과	송승민	조교수	특수교육학과		교육학	박사(Ed.D)
중등특수교육과	최민식	조교수	특수교육	직업.전환교육	특수교육학	박사
교양학부	윤신숙	교수	유기화학	유기화학	이학	박사(Ph.D)
교양학부	정은정	교수	식품영양	식품영양	이학	박사(Ph.D)
교양학부	임헌규	교수	선진및성리학	동양종교철학	철학	박사(Ph.D)
교양학부	심정연	교수	컴퓨터실습	컴퓨터실습	이학	박사(Ph.D)
교양학부	이여봉	교수	가족사회학	사회학	문학	박사(Ph.D)
교양학부	신인섭	교수	프랑스현대철학	문화비평	철학	박사(Ph.D)
교양학부	박효춘	교수	영문학	실용영어	문학	박사(Ph.D)
교양학부	김은애	교수	독일고전문학	독일어회화	문학	박사(Ph.D)
교양학부	윤승태	부교수	목회상담	신학	신학	석사(Th.M)
교양학부	이대연	부교수	생체역학	생체역학, 노인재활	체육학	박사
교양학부	주해종	부교수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공학	박사(Ph.D)
교양학부	임아영	조교수	심리학	심리학	심리학	박사(Ph.D)
교양교수부	윤희환	교수	실용영어 실용영어		문학	박사(Ph.D)
교양교수부	이진영	교수	컴퓨터실습	컴퓨터실습	공학	석사
교양교수부	한상일	교수	컴퓨터실습	컴퓨터실습	경영학	박사(Ph.D)

부서	성명	직급	세부전공	채용시전공	학위종별	학위코드
교양교수부	강경락	교수	동양사	동양사	문학	박사(Ph.D)
교양교수부	고운정	부교수	경제학전공	영어회화	교육학	박사(Ed.D)
교양교수부	데니얼	부교수	물리학	영어회화	문학	석사
교양교수부	김태희	부교수	역사학 및 아시아사	영어회화	문학	석사
교양교수부	KIM HYUN JUNG	부교수	음악학	영어회화	음악학	석사
교양교수부	간호배	부교수	현대문학(시)	국어국문학/언어와표현	문학	박사(Ph.D)
교양교수부	캐틀린 포네스코	부교수	American Literature	영어회화	문학	학사
교양교수부	SWANSON TODD Allen	부교수	FINANCE	영어회화	경영학	석사
교양교수부	BRODIE DANIEL ERIC	부교수	역사학	영어회화	문학	학사(B,A)
교양교수부	정혜경	부교수	고전문학	국어국문학(고전문학)	문학	박사
교양교수부	JORGENSEN EDWARD	부교수	국제관계학	영어회화	국제학	학사
교양교수부	노춘기	부교수	현대문학	국어국문학(현대문학)	문학	박사
교양교수부	윤성민	부교수	설교학	설교비평학	신학	박사
교양교수부	박상민	조교수	현대문학	국문학	문학	박사(Ph.D)
교양교수부	장재호	부교수	Korea MBA	경영학	경영학	석사
교양교수부	최경아	조교수	스포츠심리학	체육학	체육학	박사(Ph.D)
교양교수부	김가영	조교수	컴퓨터공학	ICT융합	공학	박사(Ph.D)
교양교수부	이종화	조교수	사회복지학	사회봉사	사회복지학	박사(Ph.D)
교양교수부	허지욱	조교수	컴퓨터공학	ICT융합	공학	박사(Ph.D)
교양교수부	김수정	조교수	사회학	사회학	사회학	박사
교양교수부	최호원	조교수	위상수학	수학	이학	박사(Ph.D)
교양교수부	Jennifer Kim	조교수	교육학	Academic English	교육학	석사
교양교수부	DUNNE JIMMY	조교수	Software Development	Academic English		학사
교양교수부	KUROYANAGI SHIGEO	조교수	이론언어학	일본어(언어와 문학)	문학	박사
산학협력단	이계천	부교수	기술경영	창업학전공 또는 관련전공	경영학	석사
산학협력단	김형채	부교수	기계설계학	정부사업수주	공학	석사
산학협력단	이정우	부교수	수학	정부사업수주	이학	학사
산학협력단	홍성근	부교수	전자공학	정부사업수주	공학	학사
산학협력단	김미경	조교수	향장생물	정부사업연계/기업연계/상 업	이학	박사(Ph.D)
산학협력단	서은선	부교수	영상예술	정부사업면계/기업면계/장 업	영상학	석사(M.A)
산학협력단	옥승수	부교수	통신공학	정부사업연계/기업연계/상 업	공학	박사
산학협력단	박석훈	조교수	식품공학	정부사업 및 기업연계	이학	박사
산학협력단	신현정	부교수	전자공학	전자공학	공학	학사

부서	성명	직급	세부전공	채용시전공	학위종별	학위코드
산학협력단	손태문	부교수	전자공학	전자공학 전자공학		학사
산학협력단	엄주환	조교수	사회적경제	정부사업및기업연계지원 사업관리	사회복지학	석사
산학협력단	이강모	조교수	조소	정부사업및기업연계지원 사업관리	미술학	박사
산학협력단	이동익	부교수	경영학	정부사업및기업연계시원 사업관리	경영학	박사과정새 학
산학협력단	이성수	조교수	산업디자인전공	정부사업및기업연계지원 사업관리	미술학	석사
산학협력단	이현구	부교수	경영학	정부사업및기업연계지원 사업관리	경영학	박사과정새 학
산학협력단	이환승	부교수	경영일반	정부사업및기업연계지원 사업관리	경영학	석사
산학협력단	서오권	부교수	저자소자	외부수탁연구, 산학연 연게사업 기획 및 추진	공학	박사
산학협력단	서장원	부교수	건축공학	외부수탁연구, 산학연 연게사업 기획 및 추진	건축학	석사
산학협력단	안성기	부교수	경영학	외부수탁연구, 산학연 연게사업 기획 및 추진	경영학	박사
산학협력단	오단이	조교수	사회복지학	기술상업, 사회석기업 창업	사회복지학	박사(Ph.D)
대학일사리플러스 센터	이정연	부교수	가정교육학	직업상담학전공 및 취업관	공학	박사
대학일사리플러스 센터	정영민	부교수	인사관리	경영학	경영학	박사과성수 료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양기종	부교수	인사조직	인사조직	경영학	박사(Ph.D)
대학일사리플러스 센터	오애란	부교수	교육공학	취업프로그램운영전문가	교육학	석사
대학일사리플러스 센터	이윤경	부교수	직업상담	직업학	상담학	석사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나재훈	부교수	교육심리 및 상담	기업체 발굴과 취업전문가	교육학	석사(M.A)
대학일사리플러스 센터	김현지	부교수	직업상담전공	직업상담	상담학	석사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이주미	조교수	심리학	진로 및 취업 상담	심리학	석사
창업지원팀	고태형	부교수	서비스경영 및 컨설팅	창업학전공 및 관련전공	행정학	박사(Ph.D)
창업지원팀	주철근	조교수	기술경영	창업지원전문인력	경영학	박사
미래목시융목합 연구소	길혜민	부교수	부동산개발.기술	부동산개발.기술	부동산학	박사(Ph.D)
미래목시융목압 연구소	이해준	부교수	컴퓨터공학	사외목시학,실버산업학선 공,ICT · 융복합분야	공학	박사(Ph.D)
Al·SW 융합연구소	고희애	조교수	컨텐츠공학	ICT(소프트웨어 및 전자공학)	공학	박사
미래목시융목합 연구소	노영희	조교수	여가관관개발, 명소마케팅	사회복지 및 사회공헌	관광학	박사
미래목시융목합 연구소	박소임	조교수	건축공학	도시/주거환경(건축)	공학	박사(Ph.D)

직원명단

2024.03 기준

실·처	부서명	팀장	직원	조교
	비서실		김주용, 이은경, 윤대영	
	부총장실		한승희	
	교목실	이숙희	이주영	우지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허정구	, , =
	인권센터	이종열 (겸직)	이주익	
	교육혁신센터	김진우	김미정, 고매성, 임승희, 손슬기	
대학교육 혁신단	교수학습지원센터	박정은	김나래, 노아름, 이유현, 정주은, 최병민(겸무)	
	창의융합교육센터	이용신 (겸직)	김민영, 정다운	
감사팀	감사팀	박주성		
	기획예산팀	신영재		
기획처	IR센터	김진확	최미경, 장혜진, 유아론식	
기획시	대외교류센터		김미현, 강보경, 이승진, 이진솔, 정규홍	김옥실
인사처	인사팀	조영일	홍근의, 유나영, 장현희, 김성희, 강정은, 윤혜정	
	총무구매팀	박재숭	임현진, 우근영, 박연희	
총무처	회계경리팀	박상준	홍의훈, 김지영, 이준배, 김진갑	
· 중구시	안전시설팀	여성권	김태문, 구용석, 성인혜, 최락기, 우제완, 장철호, 한태성, 양승현	
교무처	교무팀	이용신	김가영, 차우석, 조호성, 이규리, 김서영, 김은총, 김남웅	
	원격교육지원센터	고광모	유지훈, 정석진	이경은
	장학복지팀	조성용	조은영, 전찬영, 강명구, 여진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형렬	박선경, 조원희, 신정애, 김수경, 류재신	
학생처 (부처장	창업지원팀	이형렬 (겸직)		
이대길)	현장실습지원센터	이형렬 (겸직)	최병민	
	마음나눔센터	손성이	한예니, 양나은, 김덕혜, 조영숙, 신주화, 이주익(겸무)	
입학처 (부처장 기호운)	입학전형관리팀	기호운	김현승, 최성열, 박주용, 탁하얀, 오현주, 이세은, 김훈성, 이선영, 강경하, 임미숙, 주아로미, 현지은, 한현진	
대학원	대학원교학팀	이종열	이덕만, 강선아, 박성모, 김가영, 박수현	
	교학1팀	이상언	하진숙, 안정아 오윤경, 안성준, 이예림, 신승원, 김도현	엄예지, 유진욱, 장하연, 김성훈 유희상, 조진호
대학	교학2팀	김희정	주광영, 김용규, 김현미, 장민정, 송정한, 최여광, 이애림	박성준, 박예은 이경민, 강유빈 최주현

실·처	부서명	팀장	직원	조교
	참인재대학 교학팀	김희정 (겸직)	이신성, 김보람, 정아람	
	중앙도서관	이동훈	윤혜선, 정재봉, 박소은, 강경희, 김예준, 고흥배	
	전산정보원		김충인	
	신문방송국		박주성(겸무)	
부속기관	글로컬사회공헌센터	박신규	이수연, 박동선(겸무)	
	장애학생지원센터	박신규 (겸직)	윤재용, 온희경, 박동선	
	심전생활관(관장김종대)	김종대 윤인순	차광윤, 조월호, 박지숙, 이한미	김지은, 임소영
	대학진료소		여명숙, 박세진	
	동문지원국		주향빈	
부설기관	산학협력단	조익형		
구리기단 	아동청소년발달센터			
	평생교육원	강태우	김민재, 배은옥, 임완준, 이연주	
	어학교육원	김종대 (겸직) 배임천	고영린, 김민규, 김보영	
부설 교육기관	린이세종학당	김종대 배임천 (겸직)	고영린, 김민규, 김보영	
	아시아사무소	배임천	고영린(겸무), 김민규(겸무), 김보영(겸무)	
	교육연수원	이종열	이덕만, 강선아, 박성모, 김가영, 박수현	
	예술영재교육원		이민경	
부설 연구기관	교책연구소(원) - 미래복지융합연구소 - Al·SW융합연구소		김미정(겸무)	
	특별연구소(원) - 한국사회복지연구소			
기타기관		신영일 (연대장)		
	제205학군단(ROTC)		장진, 허용식	
	(TF) RISE사업단	미취공		
(TF)국책	(IF)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TF)벤처스타트업아카데미	나한홍 나한홍		
사업본부	(IF)엔서스타드립아카데미 사업단	다안용 (겸직)		
	(TF)첨단산업아카데미사업단	(1 1)	김진아	